

2010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

- 일 시 : 2010. 6. 23(수) 14:00 ~ 6. 24(목) 14:00
- 장 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해운대)



일 정 표

■ 일시 : 2010년 6월 23일 (수) 14:00 ~ 6월 24일 (목) 14:00 <1박 2일>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부산 해운대)

■ 대주제 :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

제 1 일		6. 23 (수)	
시 간	일 정	발표 및 진행관련 사항	장소
13:30~14:00	등 록		그랜드 볼룸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 이기수 회장 - 신입 총장 소개 - 신입 사무총장 인사		
14:30~15:10	기조강연 : 대학의 초일류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사 회 : 김영길 부회장 발 표 :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15:10~15:40	대학 선진 경영 사례 : 대학운영 선진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사 회 : 김영길 부회장 발 표 :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15:40~16:00	<i>Coffee Break</i>		
16:00~17:2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사 회 : 이기수 회장 발 표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7:20~18:00	휴 식		
18:00~19:30	만찬		
19:30~20:10	문화 공연		

제 2 일

6. 24 (목)

시간	일 정	발표 및 진행관련 사항	장소
07:00~09:00	조 찬		뷔페식당 (본관1층) 카페테라스 (신관1층)
(09:00~09: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09:30~10:30	7개 특별위원회별 분과세미나	발 표 : 7개 특위 자문교수 분과토론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	좌 장 :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 발 표 :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	Grand Ball Room1 (본관2층)
	대학재정 대책위원회	좌 장 :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 발 표 :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Sydney Room (본관2층)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좌 장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발 표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학장)	Grand Ball Room3 (본관2층)
	국·공립대학 발전위원회	좌 장 : 송용호 (충남대학교 총장) 발 표 : 신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Grand Ball Room2 (본관2층)
	사학법 대책위원회	좌 장 : 이강평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발 표 :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수)	Miami Room (본관2층)
	대학평가 대책위원회	좌 장 : 이현청 (상명대학교 총장) 발 표 : 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Sicily Room (본관1층)
	국제화 대책위원회	좌 장 : 박동순 (동서대학교 총장) 발 표 : 최홍석 (고려대학교 교수)	Napoli Room (본관2층)
10:30~10:40	Coffee Break 및 장소 이동		
10:40~11:20	업무보고 : 대학인증평가 추진경과	발 표 : 이영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	카프리룸
11:20~12:30	특별위원회 분과세미나 종합결과 발표	좌 장 : 한 송 부회장 발 표 :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12:30~14:00	오 찬 (이기수 회장 초청)		그랜드볼룸
14:00~	설립별 분과 세미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시실리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카프리

개 회 사

넘실대는 물결 위로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삶의 역동성이 분출하는 부산에서 2010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로 부산에 와보니 시원한 바다 바람에 총장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새로이 충전되는 듯합니다.

금번 세미나는 대교협이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총장님들의 거침없는 토론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비전을 구현하시는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전국의 대학총장들이 모이신 자리인 만큼 대학운영의 남다른 노하우와 현장에서 체득한 탁견을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입니다. 특히 세미나 2일차에 진행되는 7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학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심도 깊은 논의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화와 자율화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 대학교육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협심을 통해 교육공동체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생산적인 담론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고등교육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그 어느 해보다도 대학의 지향점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면서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의 기조 강연과 사례발표를 맡아주시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님과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참석자간의 우의를 두텁게 할 자리를 제공해주신 허남식 부산시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치밀하게 준비하신 성태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대교협 관계자의 수고와 헌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제가 대교협의 회장을 맡은 지 70여일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혁신을 고민했고, 그간 진행하던 사업들에 효과를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총장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제 능력 이상으로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교협의 역사와 업적을 이어나가 대교협이 한국 대학교육의 도약을 이끄는 구심력 강한 협의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는 하루하루가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지식의 생산이 중요시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요청받는 중입니다. 이제 국내 대학들도 세계의 무대에서 생존과 발전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에 따라서는 존립까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무의미한 국내의 서열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대학들과 겨룰 실력을 키우고, 자원을 배양해야 합니다.

대학의 국제화는 현실이 된지 오래입니다. 교수를 한 분을 초빙해도 세계 대학을 놓고 그 분의 가치와 요구가 매겨집니다. 대학 지원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구촌에서 대학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대학 졸업자 또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합니다. 이미 대학 모든 구성주체들이 글로벌한 무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화로 인한 경쟁의 노출 뿐 아니라 상시적인 변화와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학 이미지에 손상하기 쉬운 구도의 미디어 환경, 대학내에서 번지는 대입반수와 취업반수의 풍토,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내외의 구조조정 문제 등 고등교육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모두에서 한국 대학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대교협을 맡는 저는 국내 대학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학입학사정관제입니다. 2008학년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돼 2011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신입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계 전형에 공통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를 설정하고, 여기에 개별 대학의 건학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그간 지적된 대학입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대학들의 협조가 계속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학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막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주고,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이 되도록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총장님의 대학운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이 헌신하시는 대학마다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6대 회장 이기수

목 차

기조강연 : 대학의 초일류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1

대학 선진 경영 사례 : 대학운영 선진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5

7개 특별위원회별 분과 세미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19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31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51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67
- 사학법대책위원회 83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105
- 국제화대책위원회 119

업무보고

- 대학인증평가 추진경과 129

기초강연



대학의 초일류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윤 종 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대학 선진 경영 사례



대학운영 선진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조 무 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대학운영 선진화와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 울산과기대 사례 -

울산과기대
총장 조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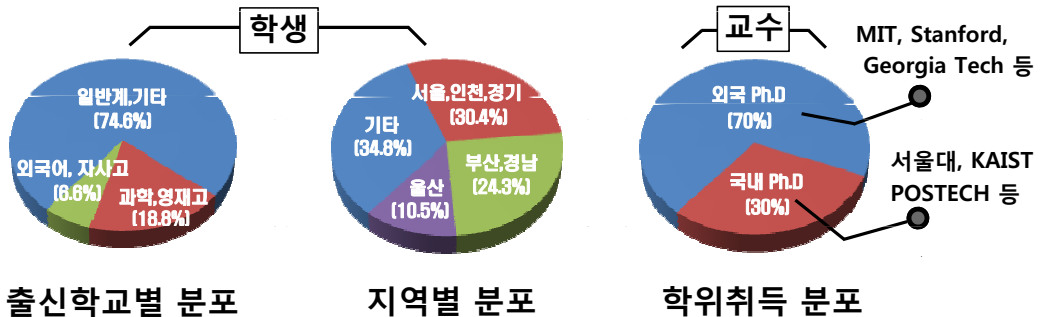


캠퍼스 전경 (KTX 울산역에서 5분거리)

Toward a World-Leading University

| UNIST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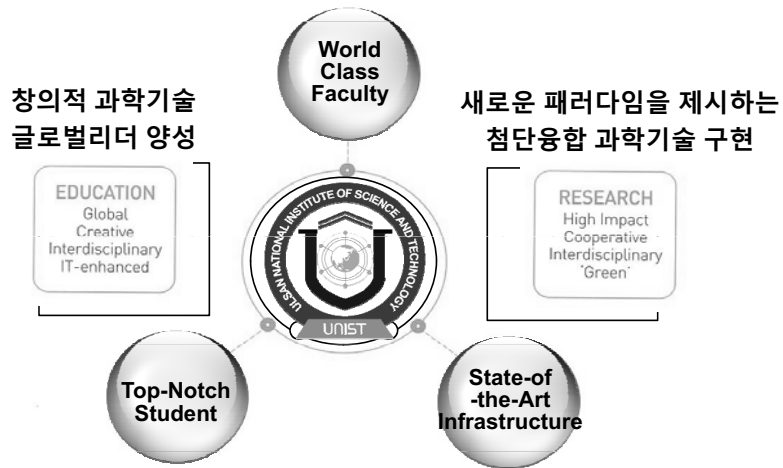
- ❖ 개교 : 2009년 3월(국립대학법인)
- ❖ 규모 : 학생 5,000명(학부 3,000명 + 대학원 2,000명), 교수 400명
- ❖ 현황 : 학생 1,500명(학부 1,250명 + 대학원 250명), 교수 108명



| UNIST 비전 및 목표 |

❖ 비전 :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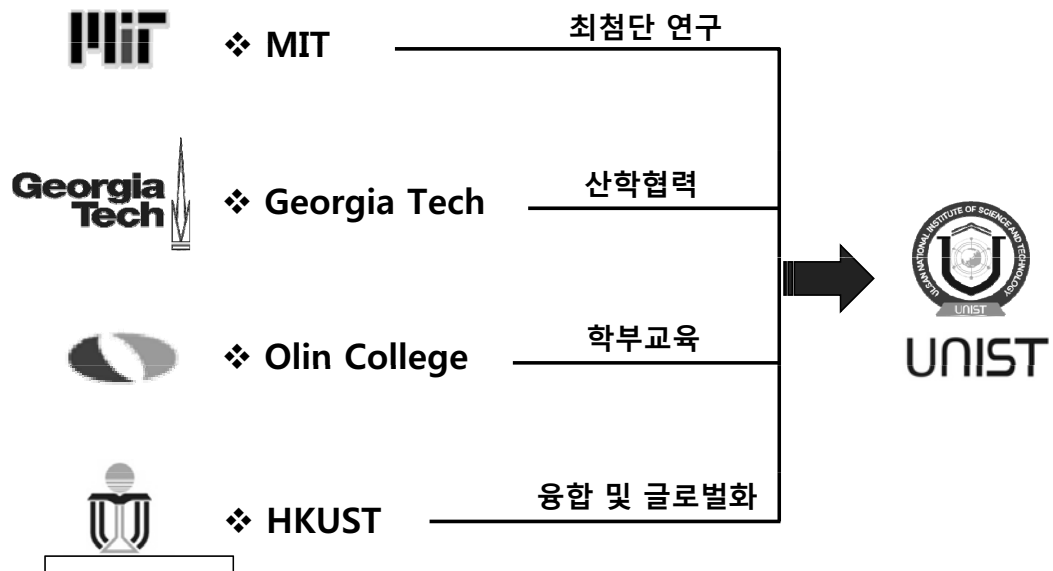
❖ 목표



❖ 실행목표

- 2020 : 세계 30위권 (홍콩과기대)
- 2030 : 세계 10위권 이공계 특성화 대학

| Role Mode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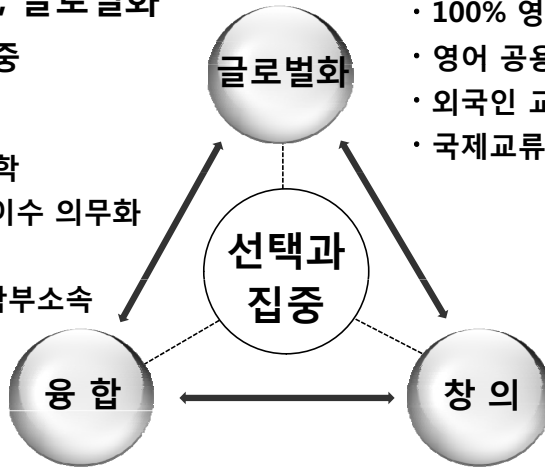


| UNIST 발전전략 |

❖ 창의, 융합, 글로벌화

- 선택과 집중

- 전 학생 무전공 입학
- 2개이상 전공트랙이수 의무화 (135학점)
- 전 교수 2개이상 학부소속 의무화



- 100% 영어강의
- 영어 공용화 추진
- 외국인 교수 및 학생 20% 목표
- 국제교류 활성화(교육 및 연구)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90%)
- LMS를 통한 토론식 수업 (Black Board / Wi-Fi / Smart Phone)
- 인문소양교육, 리더십교육 강화

4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

| UNIST 학사 조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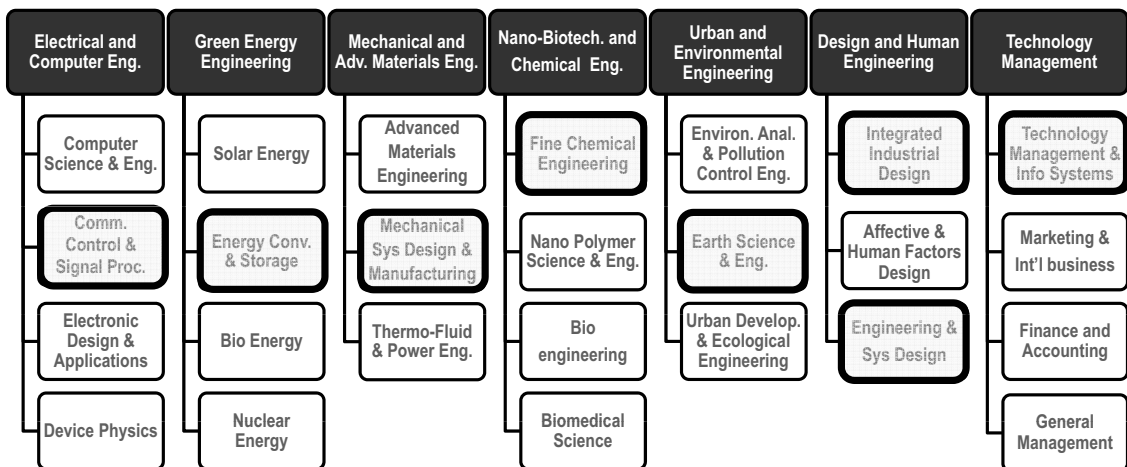
❖ 7개 융합학부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Electrical and Computer Eng.)
- 친환경에너지공학부 (Green Energy Eng.)
- 기계신소재공학부 (Mechanical and Advanced Materials Eng.)
- 나노생명화학공학부 (Nano-Biotechnology and Chemical Eng.)
- 도시환경공학부 (Urban and Environmental Eng.)
-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Design and Human Eng.)
- 테크노경영학부 (Technology Management)

❖ 전 교수 2개 이상 학부소속 의무화

| 융합교육 프로그램 |

❖ 융합교육을 위해 2개 트랙 이수 의무화(총 135학점 이수)



| 인문소양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

❖ 전 학생 이수 의무화

- 인문소양 교육 (AHS)

- Arts and Creativity (예술과 창의성)
- Literature and Creativity (문학과 창의성)
- Globalization and Economy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 Society and Culture (사회와 문화)
- Evolution of Civilization (문명의 발전)
- What is "I" ? (나의 정체성)
- Effective Communications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경영마인드 함양 (Entrepreneurship) 및 리더십 교육

- Leadership and Teamwork (리더십과 팀워크)
-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과 혁신)
- Dynamics of IT (IT 개론)

- 정직성 교육

- 무감독 시험 / Honor Code 제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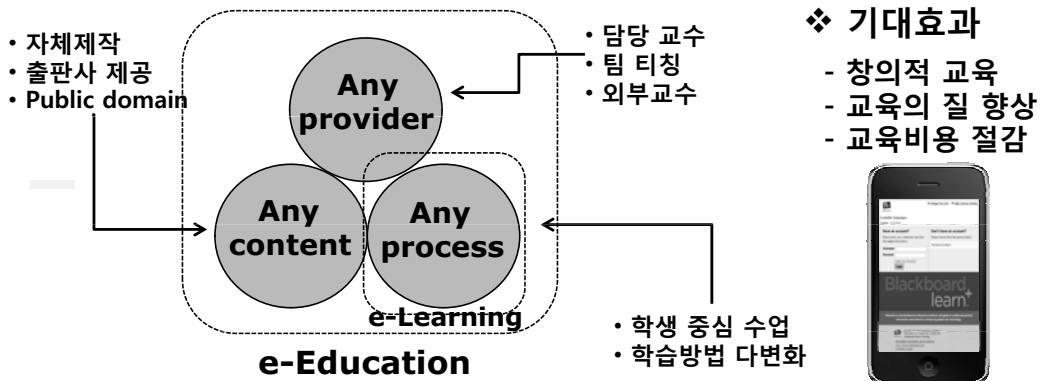
| 창의교육 : e-Education |

❖ 목 표 : 창의적 토론식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비 절감

※ 시간강사에 의한 강의 : 0

❖ 방 법 : 정보기술 집약적 교육 (IT-intensive)

- LMS → Blackboard system based learning infrastructure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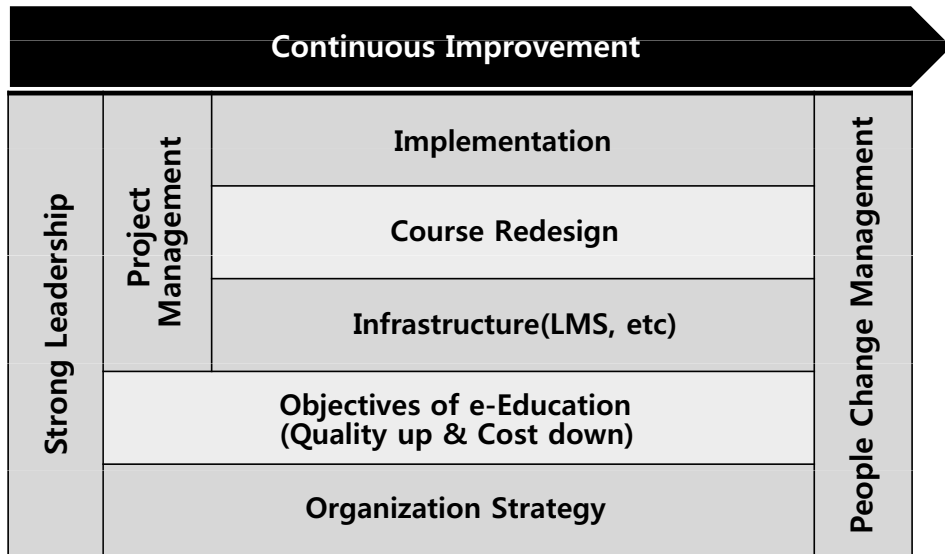


❖ LMS / Wi-Fi / Smart Phone으로 연결된 m-Campus 구축

- 전 학생/교수/직원 iPhone 사용

9

| e-Education Project Framework |



10

| LMS를 통한 e-Education의 파급효과 |

- ❖ 100% 영어강의 조기 정착
- ❖ 창의적 교육
 - Web-Based Learning(50%) + Problem-Based Learning(50%)
 - 토론식 수업 가능
- ❖ 학생들의 학업의욕 제고
 - 도서관 24시간 개방(학생들 요구)
- ❖ 교육의 질 향상 및 비용절감 동시추구
 - 시간강사 0

11

| 대학교육과 IT Innovation |

- ❖ The HORIZON Report 2010 Edition (2002-)
 - The NEW MEDIA CONSORTIUM
 - Sparking Innovative Learning & Creativity
 - EDUCASE Learning Initiative
 - Advancing Learning through IT Innovation
- ❖ 향후 5년 내에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Emerging Tech. 및 Trend 소개
 - 1년 이내 : Mobile Computing
 - 2~3년 이내 : Electronic Books
 - 4~5년 이내 : Gesture-Based Computing
- ❖ UNIST : 2010년 1학기 : iPhone(Wi-Fi/LMS) ; 2011년 1학기 : iPad
IIT(미국) : 2010년 9월 : iPad

12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

| 중점 육성 연구소 |

❖ 녹색성장 및 6대 신성장동력분야 선택과 집중 (5대 연구소)

- 에너지/환경(Green Energy & Environment)
 - Solar Cell | Energy Conversion & Storage | Bio Fuel | Nuclear Energy
- 첨단 융합부품소재(Advanced Chemicals/Materials)
 - Carbon Nanomaterials | Nano-Composites | Ceramic Materials for Energy
- 나노바이오(Nano-Biotechnology)
 - Medical Diagnostics | Stem Cell | Bio-refinery | Environmental Sensors
- IT융합기술(Information Technology Convergence)
 - Telematics | Human-Machine Interface | Assistive Robot | Smart Home System
- 테크노경영(Sustainable Technology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Open Innovation | Risk Management | Tech Transfer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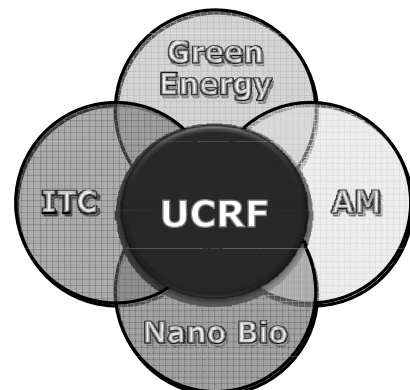
| 중앙기기센터(UCRF) |

❖ 최첨단 연구기기 공동활용화 인프라 구축

- 분석기기실 (연구기자재 효율화 및 학문간 융합)
- NFC (Nano Fabrication Center – Clean Room)
- 환경분석센터(다이옥신 측정 정부공인기관/ 국제인증 추진)
- 기계가공실 (Machine Shop)
- 동물실험실 설계 중

❖ 보유 장비

Equipments	
NMR (600 MHz, solid/liquid)	HR-TEM, TEM
3D atom probe	FIB, FE-SEM
E-beam Lithography	VT-STM, AFM
AFM-Raman	MALDI-TOF-TOF
GC-MS-Ms, LC-MS-Ms	FT-IR microscopy
XPS, XRD, XRF	Confocal Laser Microscope
GC/HRMS, LC/ICP/MS	GC/ECD



15



국제 협력

| 국제 협력 |

❖ Georgia Tech과 IT 및 신소재 분야 공동연구소 설립



❖ Max Planck 재단과 “Schöler Stem Cell Research Center” 설립

- 2010년 8월 → 현판식 및 개소식 예정

❖ Olympus Bio-Med Imaging Center

- 2010년 8월 → 현판식 및 개소식 예정

❖ JEOL Materials Imaging Center

- 2010년 8월 → 현판식 및 개소식 예정



| 주요 성과 |

- ❖ WCU 사업 2개 선정
 - 유형 1 (친환경에너지), 유형 2 (나노바이오)
- ❖ 신기술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단 주관대학 선정(플렉서블 전지개발)
 - ETRI, LG 화학, 서강대 참여
- ❖ 미국 NIH R21 과제 선정
-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 ❖ 한국과학창의재단 URP 과제 최다 선정
 - 85개 과제 중 13개 과제 선정



특별위원회별 분과 세미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좌 장 : 노동일 위원장 (경북대학교 총장)

발 표 : 전광석 자문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대학자율화 추진의 과제와 방향

전광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발표의 구성

1.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제안)들
2. 2009-2010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
3.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의 내용
4.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 (1) 「고등교육법」 개정 및 개정안의 최근 경향
 - (2) 국가와 대학의 기본적인 관계 - 특히 「고등교육법」 제1조 및 제5조 와 관련하여

II. 기존 논의

1.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 「고등교육법」 제1조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입법목적으로 선언
참고; 법 제1조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포괄적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과부는 대학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감독을 하는 방안 검토.
참고; 법 제5조 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칙 제정 및 개정 시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규칙제정권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함

참고; 법 제6조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학의 자율성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 지원 강화 방안

(1)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화 규정 삽입 필요

(2) 대학의 수익사업 장려 규정 삽입

참고; 법 제7조 제1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3. 대학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근거 보충

(1) 연구전임교수 뿐 아니라 강의전담교수, 또는 산학협력전임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 보충

참고; 법 제15조 제2항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

(2)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을 학칙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참고; 법 제16조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외 예컨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참고; 법 제20조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

- (4)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가능성 외에 국내대학간의 공동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함.

참고; 법 제21조 “①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혹은 강화)

1) 현재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대교협으로 하여금 “회원대학” 간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입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대학에 일임하거나 대학 정관 혹은 학칙이나 내규에 맡기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대학의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 학교협의회 “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 회원대학 “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하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Ⅲ. 2009-2010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은 2009년 1월 30일(2009년법), 그리고 2010년 1월 22일(2010년법)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 2009년법

2009년 법은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대해서도 총장 혹은 학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이들 학교에서 고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대학과 같이 총장 혹은 학장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2. 2010년법

2010년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정이었다. 개정 법률은 수업료 등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개정 법률을 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 내지 7항을 삽입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법률 개정의 기본목적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있다.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적 및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법적 조치로서 등록금의 책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등록금 산정의 실제적 기준으로 기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국가재정에 의한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등록금의 징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행정적 및 재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IV.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의 내용

「고등교육법」이 올해 1월 22일 개정된 이후 현재 국회에 다음과 같은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있다.

1. 권영진의원 대표발의(2010.2.8)

- (1) 현행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해당 학기 개시일 전 60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대출 개시일은 해당 학기 개시일 전 40일경이다. 이에 일부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2)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징수일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대출 시점이후로, 즉 학기 개시일 10일 혹은 30일 이후로 조정하는 목적을 갖는다(법 제 11조 제7항 삽입).
- (3) 수시모집 합격생의 경우 원활한 입학정원관리를 위하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전에도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총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법 제11조 제9항 삽입).
- (4)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학의 수업료 징수기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고 한다(법 제11조 제10항 삽입).

2. 이화수의원 대표발의(2010.2.8)

- (1) 입학전형에 있어서 전형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수입액 중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2) 적정 전형료를 채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표준전형료를 고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형료를 정하도록 함(법 제34조에 제7,8항으로 삽입).

3. 김정의원 대표발의(2010.2.25)

- (1) 대학재학생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제대 후 복학을 하는 경우 그 동안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재학생에 비해서 등록금 액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생긴다.
- (2)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인상률을 조정하는 근거를 법 제11조 제2항에 신설함.

4.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안(2010.4.6)

- (1) 취약계층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고소득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개정안

- (2) 국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책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한다(법 제11조 제6항에 신설).
- (3)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화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다만 기여입학제는 제외),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신설(법 제11조의 2 신설).

5.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2010.4.7)

- (1)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1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등록금납부방법과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하여 분납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개정이다.
- (2) 구체적으로 법 제11조 제1항에 단서를 두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한다. 제5항에 등록금 납부를 현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한다.

6.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2010.4.8)

- (1) 2010년법에서 대학의 등록금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대학원 등의 등록금은 높게 인상된 사례가 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을 갖는 개정안이다.
- (2) 구체적으로 제11조 제2항에서 대학에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대학원 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V.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1. 「고등교육법」 개정 및 개정안의 최근 경향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헌법에 근거를 갖는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서의 인사·연구·학생선발 및 전형형을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학사, 대학질서 및 대학시설과 재정의 자치”를 내용으로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대학재정의 일부를 이루는 등록금에 관한 실체적 및 조직적 기준을 법률이 직접 규율하며, 그 결과 대학의 이 문제에 대한 자율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법인과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대립 속에서 자율성이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의 부담자인 학생,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보다는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다만 등록금 책정에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될 수 없는 입법이다.

그밖에 등록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규정은 부분적으로는 입법사항이 아니며, 또 부분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향후 대학에서 학내 규정을 통하여 선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이 의제를 선도하여야 할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국가와 대학의 기본적인 관계 - 특히 「고등교육법」 제1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을 갖는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단일가치가 지배하는 공동체로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는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국가의 연구와 교육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학이 대학의 중요 사항에 대한 우선적 자율권을 갖지만 대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자율에 위반될 수는 없다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실현된다.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은 자율의 대상을 독립적으로 자율하고 있을 뿐 고등교육법의 존재의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초중등학교에서와 달리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법 제5조의 형성과 이해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5조는 고등교육기관이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 있어서도 고등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기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인격체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이들에게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교육하는 과제를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 교육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합목적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침으로 교과서가 채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연구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구성원인 학생에 전달되고 함께 검증을 행하는 장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적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감독은 사후적으로 법적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 혹은 제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적 및 합목적적 기준에 따른 지도와 감독은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될 수 없다. 현행법 제5조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대학과 국가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법인과 학교와의 관계, 학교에서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직원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이전 사립학교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올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3. 대학전형에 있어서의 자율성

대학전형은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의 중요한 구성내

용이지만 다른 한편 교육의 기회 및 국가가 정책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다만 전자의 측면, 즉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대교협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대교협이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입학전형에 대한 규율에 있어 국가와 대교협의 기능 분담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입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대교협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자율적인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교협이 정부의 “연장된 손”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교협이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지만 이러한 결정권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상론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회원대학 중에는 대교협의 이러한 규율권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근본적인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 위원구성현황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27명)		
직 위	소속대학명	성 명
위원장	경북대	노동일
부위원장	국민대	이성우
위원	경성대	김대성
	금강대	성낙승
	금오공과대	우형식
	동서대	박동순
	동의대	정량부
	목포대	고석규
	백석대	하 원
	부경대	박맹언
	상명대	이현청
	상지대	유재천
	서강대	이종욱
	서울시립대	이상범
	숙명여대	한영실
	순천향대	손풍삼
	신경대	송문석
	아주대	박종구(직대)
	우석대	라종일
	이화여대	이배용
	인천대	안경수
	전남대	김윤수
	중원대	홍기형
차의과학대	박명재	
초당대	김병식	
한국성서대	강우정	
한밭대	설동호	
자문교수	서울교대	허종렬
	연세대	전광석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채선기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좌 장 : 이영선 위원장 (한림대학교 총장)

발 표 : 송기창 자문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대학재정 확보 방향과 과제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I. 서론

- 200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재정 문제를 공론화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률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함.
-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이견이 노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김우남의원 안과 임해규의원 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실패함.
- 대교협 내의 불협화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표류하는 사이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대학등록금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22일 공포됨으로써 대학재정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음.
 - 대교협 차원의 반대성명과 대학들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치적 타협에 밀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됨.
 -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대학의 절대적인 수입원이었던 등록금마저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들이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제약을 받게 됨.
- 따라서 대학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이 논문은 대학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 대학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고등교육재원의 정부부담 부족

- 2006년에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0% 정도를 고등교육비로 정부가 부담했으나, 한국은 0.6%에 불과함(OECD, 2009).
 - 2001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담률을 확대하는 경향이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률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담률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임.
- 2008년 이후에 고등교육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5조 8,386억원(HRD 및 과학기술예산 일부 포함, 교과부 내부자료)으로 국내총생산액(GDP) 추정치 1,050조원의 약 0.56%로 여전히 0.6%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

<표 1>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단위: %)

발표년 도	구 분 기준 년도	구 분 국가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2004	2001	한 국	4.8	3.4	8.2	3.5	1.0	4.6	0.4	2.3	2.7
		OECD평균	5.0	0.7	5.6	3.5	0.3	3.8	1.0	0.3	1.4
2005	2002	한 국	4.2	2.9	7.1	3.3	0.9	4.1	0.3	1.9	2.2
		OECD평균	5.1	0.7	5.8	3.6	0.3	3.8	1.1	0.3	1.4
2006	2003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OECD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2007	2004	한 국	4.4	2.8	7.2	3.5	0.9	4.4	0.5	1.8	2.3
		OECD평균	5.0	0.7	5.7	3.6	0.3	3.8	1.0	0.4	1.4
2008	2005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2009	2006	한 국	4.5	2.9	7.3	3.4	0.9	4.3	0.6	1.9	2.5
		OECD평균	4.9	0.8	5.8	3.4	0.3	3.8	1.0	0.5	1.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 한국의 고등교육비의 공공부담비율은 24%로서 OECD 국가 평균(67%)의 1/3에 불과함.
 - 공공부담비율은 낮지만, 민간부담분을 합하면 GDP 대비 2.5%로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국민 1인당 GDP 수준에 비추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미국과 비교할 때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34.1%에 불과하며,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69.4%에 불과함.
 - GDP 수준에 맞춰 고등교육비를 투자하면 고등교육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우며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GDP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투자를 정당화 할 수 있음.
 - 사립대학 확대, 즉 민간부담에 의한 고등교육기회 확대정책을 채택해온 결과, 민간부담률은 높아졌고,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실패함.

<표 2> OECD 국가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6)

(단위 : US \$, PPP)

국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문대학	대학	계	
한국	3,393	4,935	5,719	9,060	7,261	4,653	10,844	8,564	6,212
미국	8,867	9,709	10,369	11,334	10,821	-	-	25,109	12,788
OECD 평균	5,260	6,437	7,544	8,486	8,006	-	-	12,336	7,527
한국/미국(%)	38.3	50.8	55.2	79.9	67.1	-	-	34.1	48.6
한국/OECD(%)	64.5	76.7	75.8	106.8	90.7	-	-	69.4	82.5

자료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2.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도 심화

- 세입결산 현황에 의하면, 등록금 의존도(2007)는 국·사립 51.8%(국·공립 29.7%, 사립 57.2%)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15.8%(국립 47.2%, 사립 8.0%)임.
 -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산출하면, 사립대학은 77.0%, 사립 전문대학은 91.1%에 달함(2007년 기준).
- 사립대학의 전입금 수입은 5.5%이며, 국·사립의 기부금 수입은 3.1%(국립 4.6%, 사립 3.1%)임.
- 2006년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공립 18.1%, 사립 34.1%이며, 2005년 영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4.1%였음.

<표 3> 국·사립 고등교육기관 수입 현황(2007년 결산)

(단위 : 억원)

구분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이월금	자산 및 부채수입	기타	계
국립대학	15,498	24,669	-	2,426	2,279	-	7,350	52,222
비율(%)	29.7	47.2	0.0	4.6	4.4	0.0	14.1	100.0
사립대학	120,970	17,015	11,537	5,628	20,769	16,340	19,152	211,411
비율(%)	57.2	8.0	5.5	2.7	9.8	7.7	9.1	100.0
계	136,468	41,684	11,537	8,054	23,048	16,340	26,502	263,633
비율(%)	51.8	15.8	4.4	3.1	8.7	6.2	10.1	100.0

주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대학 결산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전문대학 결산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산학협력단 결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국립대학 결산자료.

- 재정수입을 과도하게 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매년 물가인상률의 1.4 ~ 4.6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해왔고,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표 4>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증가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립대	등록금(천원)	2,471	2,654	2,903	3,115	3,426	3,837	4,169	4,190
	인상률(%)	7.5	7.5	9.5	7.3	10.1	10.3	8.7	0.5
사립대	등록금(천원)	5,109	5,452	5,776	6,068	6,472	6,916	7,380	7,420
	인상률(%)	6.9	6.7	5.9	5.1	6.6	6.6	6.7	0.5
물가상승률(%)		2.8	3.5	3.6	2.8	2.2	2.5	4.7	2.8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배율	국립대	2.68	2.14	2.64	2.61	4.59	4.12	1.85	0.18
	사립대	2.46	1.91	1.64	1.82	3.00	2.64	1.43	0.18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정보시스템 및 통계청 통계자료

- 기부금 수입이 외국대학에 비해 저조하고, 사립대학의 법인 전입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전입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을 합한 비율이 13.5%에 불과하나,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 비율이 47.2%에 달함.
 - 사립의 법인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비율과 국립의 국고보조금 비율의 차이인 33.7%가 등록금 의존도의 차이(27.5%)를 결정하는 주요인임.

3. 세출 중 시설비 과다

- 고등교육기관의 세출 결산(2007)을 보면, 인건비가 31.5%(국립 34.3%, 사립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영비가 25.5%를 차지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및 기타회계를 제외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38.4%임.
- 산학협력단 회계와 기타 회계의 경비(대부분 연구비)는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10.7%임.

<표 5> 국·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출 결산(2007년)

(단위 : 억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경비	이월금	산학 및 기타회계	계
국립	17,888	14,454	2,725	1,218	1,797	14,140	52,222
비율(%)	34.3	27.7	5.2	2.3	3.4	27.1	100.0
사립	65,151	52,772	25,584	19,344	15,394	33,166	211,411
비율(%)	30.8	25.0	12.1	9.1	7.3	15.7	100.0
계	83,039	67,226	28,309	20,562	17,191	47,306	263,633
비율(%)	31.5	25.5	10.7	7.8	6.5	17.9	100.0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대학 결산자료; 2007년 사립전문대학 결산자료; 2007년 산학협력단 결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국립대학 결산자료.

- 기능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6)를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고등교육활동 자체에 투입하는 학생 1인당 경비는 \$7,476로 OECD 국가 평균의 88.8%이나, R&D 투자는 \$1,047로 27.8%에 불과한 실정임.
- 성질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6)를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상비 비중은 83.5%, 자본적 경비의 비중은 16.5%인 반면, OECD 국가 평균 경상비 비중은 90.3%이며, 자본적 경비의 비중은 9.7%임.
 - OECD 국가의 경우 장기간의 교육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교육비 대부분이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2.7%로서 OECD 국가 평균 61.5%에 18.8%p나 낮음. 교원의 보수수준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학생 1인당 기능별·성질별 고등교육비 비교(2006)

국가별	기능별(US \$, PPP)				성질별(%)					
	교육	기타	R&D	계	경상비					자본적 경비
					인건비			기타 경상비	계	
					교원	직원	소계			
한국	7,476	41	1,047	8,564	29.0	13.7	42.7	40.8	83.5	16.5
OECD 평균	8,418	526	3,765	12,336	39.2	22.0	61.5	28.8	90.3	9.7
한국/OECD(%)	88.8	7.8	27.8	69.4	74.0	62.3	69.4	141.7	92.5	170.1

자료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4. 등록금상한제 실시로 대학재정 확충 한계

- 2010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빠르면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게 됨.
 -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함.

- 등록금의 징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학생의 등록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ICL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대학기관의 재원조달제도인 등록금을 통제하는 우를 범함.
- 등록금 상한제 실시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가격통제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교육의 질 저하 : 전임교수 임용 억제 및 시간강사 증가, 연구비 감소, 교수학습비와 학생활동비 및 장학금 등 학생복지비 지원 축소, 시설 투자 축소 등
 - 교육의 양 축소 : 개설강좌 수 축소 및 선택권 제한, 이수학점 감축, 교과외 프로그램 축소 등
 - 서비스에 대한 암거래 발생 : 등록금 이외의 수익자부담금 증가, 잡부금 발생 등
 -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한도까지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획일화될 가능성
- 등록금상한제는 현행 등록금 수준이 높은 대학보다 낮은 대학, 즉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 국립대학 중에서도 교육대학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사립대학은 1989년부터 자율화 되었으나, 국립대학은 2003년부터 자율화 되어 등록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2009년 등록금 수준이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의 56.5%에 불과하여 똑같은 비율로 인상할 경우 국립대학의 인상액은 사립대학의 56.5%에 머물게 됨.
- 시행 예정인 등록금상한제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립대학은 연간 학생 1인당 127,810원, 사립대학은 108,930원의 결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재학생 10,000명 규모의 대학이라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13억원~11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연도별 실제 등록금 인상률과 등록금상한제를 가정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립대	평균등록금 (천원)	2,471	2,654	2,903	3,115	3,426	3,837	4,169	4,190	
	인상률(% (A)	7.5	7.5	9.5	7.3	10.1	10.3	8.7	0.5	
사립대	평균등록금 (천원)	5,109	5,452	5,776	6,068	6,472	6,916	7,380	7,420	
	인상률(% (B)	6.9	6.7	5.9	5.1	6.6	6.6	6.7	0.5	
물가상승률(% (C)		2.8	3.5	3.6	2.8	2.2	2.5	4.7	2.8	
A/C		2.68	2.14	2.64	2.61	4.59	4.12	1.85	0.18	
B/C		2.46	1.91	1.64	1.82	3.00	2.64	1.43	0.18	
등록금상 한제용	등록금 인상 한도(D)	3.6	4.6	5.2	4.95	4.95	4.3	3.75	4.7	
	국립 격차	A-D (%)	3.9	2.9	4.3	2.3	5.1	6.0	4.9	-4.2
		금액 (천원)	89.6	71.7	114.1	66.8	158.9	205.6	188.0	-175.1
	사립 격차	B-D (%)	3.3	2.1	0.7	0.1	1.6	2.3	3.0	-4.2
금액 (천원)		157.7	107.3	38.2	5.8	97.1	148.9	207.5	-310.0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 2010년 등록금 인상 한도 : 5.0%

- 향후 등록금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인상 한도까지 최대한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규모 대학은 20억원, 중규모대학은 10억원, 소규모 대학은 5억원 정도의 등록금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금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Ⅲ. 발전방향과 과제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지원 확충

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고등교육재원을 법정화 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고등교육의 최소수준 유지 : 지역별·설립별로 최소교육비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간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 세입의 등록금 의존도 감축 : 기관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
- 고등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 :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교부금은 교부받은 기관이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고등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촉진 : 보조금과 비교할 때 교부금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위한 유인이 생기게 됨.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가능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등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가능해짐.

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재원 확충 효과

-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5조 8,386억원(HRD 및 과학기술 예산 일부 포함, 교과부 내부자료)이며, 여기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4,107억원과 사립대학교 교직원 연금지원 2,684억원을 합하면 총 규모는 6조 5,177억원으로 국내총생산액(GDP) 추정치 1,050조원의 약 0.62%였음.
 - OECD 평균인 GDP의 1.1%를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확보되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는 11조 5,500억원으로 2009년 교과부 고등교육예산 6조 5,177억원에 비해 약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임.

○ 김우남의원이 발의한 교부금법에 의하면, 2011년도 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6% 임. 2010년도 내국세 예산규모가 128조 727억원이므로 내국세의 6%는 7조 6,844억원임. 교부금법이 제정될 경우 추가재원 규모는 1조 1,667억원 정도임.

- 김우남의원안은 단계적인 교부율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 해 교부율 (내국세의 6%)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표 8>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안 비교

구분	김우남 의원 등 13인 발의안 (2009.11.13)	임해규 의원 등 16인 발의안 (2009.11.23)
교부금재원 (내국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1.1% 투자 위해 내국세 교부율 단계적 인상 : '11년 6%, '12년 6.5%, '13년 7%, '14년 7.5%, '15년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 교부율 8%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 교부 • 공·사립 : 국립 교부금 제외하고, 1/2은 학생수, 1/2은 교원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 교부 • 공·사립 : 교부금 재원확보 정도에 따라 전년도 국립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으로 교부함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 •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총액이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함 • 지방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금을 교부함.
기타		<p>제외 : 고등교육기관이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립대학 내부 구성원간 또는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송 진행 등</p>
재원확충효과(2010년기준)	1조 1,667억원	3조 7,281억원

- 임해규의원이 발의한 교부금법에 의하면, 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8%이므로 2010년도 내국세 예산규모(128조 727억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조 2,458억원 임. 교부금법이 제정될 경우 추가재원 규모는 3조 7,281억원 정도임.
- 임해규의원 안은 2009년 내국세예산을 기준으로 GDP 1.1%에 맞춰 내국세 교부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 규모가 2조 2,818억원 감소하여 차질이 생김.
- 교부금법이 제정된다면 재원규모는 김우남의원안(내국세의 6%)과 임해규의원안(내국세의 8%)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금 면제 및 보조에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

- 등록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면제와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비율(현원의 10% 이상)을 학교 실정과 예산사정에 따라 신중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최저 면제 비율인 현원의 3%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등록금 면제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령	현행	개정안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사립의 학교는 <u>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u>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u>30퍼센트 이상</u>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의 학교는 <u>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한</u>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u>현원의 3퍼센트 이상</u>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면제금액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요구해야 함.
- 국가유공자는 사립대학 유공자가 아니므로 수업료 면제 금액 전액을 국가

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국가가 전액 보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야 함.

- 사립대학 부담 국가유공자 등록금 면제 금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204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401억원, 대학 연평균 2억 3,560만원에 달함 (조선대학교의 경우 2008년 17억 3,500만원에 달함. 영남대, 초당대, 계명대, 원광대, 대구대의 경우도 면제 규모가 10억원 이상임.)

법령	현행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사립인 대학 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u>절반</u> 을 보조한다.	사립인 대학 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 <u>전액</u> 을 보조한다.

<표 11> 국가유공자 등록금 면제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연도	대학 수	면제 학생 수	학교 부담 면제금액	국고 부담 면제금액
2001	165	30,952	35,618,085	35,599,395
2002	162	31,252	38,562,494	38,531,642
2003	165	31,624	41,467,293	41,347,088
2004	170	29,848	41,974,190	41,009,692
2005	169	28,127	41,601,564	40,630,026
2006	173	24,756	38,802,456	37,569,135
2007	176	26,685	43,605,560	42,830,334
2008	177	22,883	38,777,230	39,475,463
총계	-	226,127	320,408,872	316,992,775
연평균	170	28,266	40,051,109	39,624,097
대학평균	-	166.3	235,595	233,083

자료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자료(2009)

3. 예산운용 합리화 및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예산 절감

- 사업일몰제, 사업비 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
- 사립대학의 경우, 결산분석 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 가결산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세출 예·결산 차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인 재정확충 지원 및 운용의 효율성·효과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단과대학장·학과장의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구성원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예산단위별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예산단위의 예산편성 및 사용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단과대학과 계열·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지출하는 재량경비를 확대하는 등 대학내 책임경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재정을 기획·운영·평가하는 전문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대학간 자율적인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대학재정운영의 전문화 노력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학재정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주립대학은 재정 및 비용 분석 부서에서 적시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재정보고와 분석을 시행하고, 영국 대학에서도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재무관리로 야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적 재무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4. 대학 재정 수입원 다각화를 위한 자구노력 확대

- 대학시설·설비 건립 및 운영,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등을 통한 지원금 확보, 지자체로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건물, 현금 등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법인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기업을 활성화하여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개선을 요구하고, 기부금모집 기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부금모집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전문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여 적립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경영마인드의 도입 확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교육 및 행정서비스, 시설 사용 등을 선별적으로 유료화 할 필요가 있음.

IV. 결론

-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등록금상한제 시행으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운용 합리화나 수입원 다각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대학의 고민이 있음.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1조제6항[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규정된 정부의 고등교육지원계획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으나, 현행 고등교육재원 지원방식으로는 등록금재원을 대체하기 어려움. 이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유임.
-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책포럼 등 대교협 차원의 내부 노력과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학구성원 서명 운동, TV토론회 개최, 신문칼럼 집필 등 사회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문헌

- 나성린·송대희·송기창·김진영·이영(2002).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 송기창(200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제는 제정할 때가 되었다” 임해규의원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청회 발제원고. 2009.5.8.
- 송기창·김병주·백정하(2008). 대학재정 확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현숙 외(2001).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Johnstone, D. B(2006). *Financing Higher Education*. Lightning Source Inc..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위원구성현황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31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원장	한림대	이영선
부위원장	공 석	
위 원	가야대	이상희
	가천의과대	송석구
	가톨릭대	박영식
	감리교신학대	김홍기
	강남대	윤신일
	건양대	김희수
	경기대	최호준
	경인교대	정동권
	경일대	이남교
	경주대	이순자
	공주교대	전우수
	그리스도대	고성주
	대구가톨릭대	소병욱
	동명대	이무근
	동신대	정기언
	부산대	김인세
	서울여대	이광자
	숭실대	김대근
	신라대	정홍섭
	영산선학대	김희정
	예수대	서광수
	을지대	박준영
	인천가톨릭대	이석재
	중부대	최희선
	진주산업대	김조원
	한국산업기술대	최준영
	한라대	이정무
	한북대	강신경
한서대	함기선	
한신대	채수일	
자문교수	숙명여대	송기창
	충북대	나민주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수경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좌 장 : 부구욱 위원장 (영산대학교 총장)

발 표 : 안경봉 지문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 학장)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장)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2

▶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론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구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목적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우수한 법률가 양성
- 전문화·특성화·다양화 교육 실현을 위한 전제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3

▶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론

- 법률시장 개방 대비
 - 외국자문사법(2009)의 제정
 -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 1단계: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미국변호사에게 미국법자문사 자격부여
 - 2단계: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 3단계: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과의 동업허용. 국내변호사고용가능
 - 한-유럽연합 FTA: 한미 FTA와 동일
 - 한-인도 FTA : 1단계 법률시장 개방
 - 한 - 동남아국가연합 FTA: 2단계 법률시장 개방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4

▶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론

- 실질적 지방 발전, 지역 균형의 구현
 - 해당지역출신 입학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봉사기회부여
 - 변호사자격취득 후 해당 지역 공익변호사로 활용하는 방안
 -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수요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실시
-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에 대응 필요
 -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30년간 소송사건증가율은 연평균 약 13~14%(소송 외 업무 증대분 제외).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의 변호사증가율은 연평균 8.4%
양자의 차이는 약 5% 정도임
- 법관 임용방식 변화에 따른 총정원 증원의 필요성
 -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기 위한 방안을 대법원에서 마련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법관을 지원하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충분히 존재해야 함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5

▶ 2010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

- 무변촌의 수 : 122개 기초단체 (52%)
-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 대리율 : 20% (2008년 현재)
- 변호사 1인당 제1심 민사본안사건 선임건수: 58.4건 (2008년 현재)
- 형사공판사건의 변호사 선임율 : 48.2% (2008년 현재)
-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법률가 수 : 79명 (2005년),
30대 대기업집단에서 고용하는 법률가의 수 : 160명 (2007년)
- 변호사 1인당 인구 : 5,891명
법관 1인당 변호사수 : 3.95명 (미국 36.66명, 영국 31.88명)

▶ 법학전문대학원 별 정원: 40~150명

- 입학정원 40명, 5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9개, 60명, 7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4개로서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6

▶ 합리적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 3,000명,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 80명 이상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학 전문대학원별 최소정원을 8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최저 교원 수 20명, 교원 1명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잡고 있음. 편제완성연도 학생수 240명. 최저 입학정원 80명 이상이어야 함
- 인가기준을 중심으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100강좌 이상을 개설해야 하므로 정원 40명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7

▶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

-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 : 교육과학기술부장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의 문제점

총 입학정원을 법조계가 사실상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음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8

▶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총 입학정원의 최저한도 입법에 규정(3,000명부터)

최저기준을 두어 3천명 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매년 입학하는 학년도(2011년)부터 5년 동안 별도 입학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최초 입학 년도 이후 6년 동안은 3천명의 입학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원하여 2016년에는 4천명에 이르도록 하는 안이 요구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기준에 대하여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의 인가행위가 기속 재량 행위가 되도록 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능의 복수화
 - 변협과 대교협이 담당

2010-06-19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9

▶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

- 학계의견 통일을 위한 공감대 구축
 - 법학전문대학원 선정대학(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간의 의견 통일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선정대학과 배제대학간 이견 해소
(신규진입 및 과소정원 해소)
- 법조인접직역통합논의와 병행한 총정원 증원 논의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0

▶ 법조직역 현황

- 변호사 이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
(단위 : 명, 2009. 12. 기준)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 노무사	손해 사정사	공인 중개사	합계
11,014	3,519	1,354	8,694	5,925	1,508	5,901	74,227	101,128

-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신규 변호사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변호사 2만 명, 2020년 3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되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1

▶ 법조인접직역의 특성

• 생성배경

- 사회발전속도에 따라 다양한 법률서비스수요가 생기게 됨에 따라 특허, 세무, 노동 등 특수분야의 법률수요는 유관국가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법조인이 아니면서 일정부문 법률수요를 담당토록 함

• 특성

-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법률서비스업무를 수행함에 비해 법조인접직역은 그 활동영역이 특허, 세무, 노무 등 제한적임
- 법조인접직역은 변호사와 병존적으로 또는 보완적, 한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법조인접직역은 분쟁초기에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종적 분쟁 해결은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법조인접직역에서는 소송대리권부여를 요구하고 있음
(예,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2

▶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반대론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인접직역 종사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 대한법무사협회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업무는 법률지식과 함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변호사 업무와는 엄연히 다름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3

▶ 법조인접직역의 통합필요성

- 주로 관련 공무원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한 법조인접직역으로의 진입보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은 일종의 법조인접직역에서의 “전관예우”의 문제점 등을 노정하였음
-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의 이중구조·병존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와 다양한 법조인접직역이 혼재하는 법조인력구조는 분명히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양성 체제와도 맞지 않음
-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 법률비용 감소 등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은 법조인접직역을 변호사 직역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법조 직역에 속하는 전문가의 전체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법조직역의 경쟁력 유지 및 합리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4

▶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방안

-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
기존의 법무사, 변리사 등 종래의 자격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는 그대로 법무사, 변리사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신규배출은 중단 하는 방안
- 제2안 (인접 직역에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1971년 및 1990년 프랑스 개혁법에서와 같이, 법무사 등 인접법률가 전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존 자격증에 기한 직역에 계속 종사 하게 하면서, 이들의 신규 배출을 중단시키는 방안
- 제3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하면서 소송대리 조정, 영국·일본 방식)
지금과 같이 여러 유형의 법률전문가를 병존하게 하되, 영국이나 일본에서처럼 각 법률전문직들(법무사, 변리사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 소송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공급자 선택권을 주는 방식

2010-06-19

법조인접직역 통합

15

▶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방안

- 법조인접직역 중 기 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되, 장래 법조인접직역 자격취득 가능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공감대가 구축되면, 기존의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로스쿨 특별과정을 통한 재교육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전적으로는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여 모든 유형의 법조인은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조인 배출 그 자체를 늘려야 함
- 이와 아울러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특별법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0-06-19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 특성화

16

▶ 변호사시험은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함.

-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능력 평가와 같은 기록형 방식만으로 평가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이 종전 사법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객관식 또는 논술식으로 법리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그와 같은 사법시험 방식의 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그러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더라도, 일본과는 달리 별도의 실무수습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여건 아래서는 실무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변호사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임.

2010-06-19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 특성화

17

▶ 변호사시험은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함.

-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정착되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설립 신청시 표방한 각각의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여 그 특성화 방향으로의 졸업생 진출 실적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하여야 함.

-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들이 일반 송무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

2010-06-19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 특성화

18

▶ 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시험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는 것이 요구됨.

- 변호사시험은 기록형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시험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술형 평가는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누고, 기록형 평가의 배점을 25-40%에서 각 과목별로 정하고 있는 데, 변호사실무능력 평가를 위해서 기록형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0-06-19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 특성화

19

- ▶ 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시험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는 것이 요구됨.
 - 변호사시험법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과목 수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를 위한 소정의 전문법률과목의 이수와 학점취득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이 되도록 관계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 함.
 - 차선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시험과목이 아닌 특성화를 위한 전문법률과목을 일정 학점(예컨대 30학점)이상 이수하는 것을 합격결정의 최저조건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됨.

2010-06-19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20

- ▶ 법학교육 현안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간담회 결과)
 -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 확대
 - 법학교육 인증제 실시
- ▶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 현재로서는 난관 예상
 - 법학전문대학원 특위가 제 역할을 할 때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가 가능함
 - 외부 (교과부, 법무부, 신문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법학전문대학원 특위활동이 필요함

2010-06-19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2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서열이 정해진 대학입학현상을 고려할 때, 소위 sky 대학을 비롯한 유명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비 법학 학부출신으로 입학정원의 상당수가 채워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이 유지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지 못한 대학의 법학전공자는 오히려 설 자리가 없으므로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이든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과도기적으로 적어도 30% 이상 또는 50%이상을 법학전공자로 채우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010-06-19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22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

- **지금까지의 학부법학 교육 :**
사법시험과목을 위주로 하는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하였음.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하여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은 고사하고 교양교육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비판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됨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법학부)의 경우 그 이전에도 소수의 졸업생만이 법조계로 진출하였고, 대부분의 졸업생은 각종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취업하였음

2010-06-19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23

▶ 법학교육 인증제 도입

- 법학인증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의 학생들은 비전부재의 상황에 빠져 있음. 법과대학은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학부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여야 함
- 법학을 전공한 졸업생과 사회의 법률 수요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법학교육인증제**를 생각할 수 있음
 - 이미 공학이나 경영학 등에서 도입한 인증제를 학부 법학교육에 도입하여, 교수·학생·대학 및 사회로 구성된 하나의 교육 체계를 구성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법률 전문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필요가 있음

2010-06-19

법학교육 현안 논의 창구 단일화

24

▶ 법학교육인증제의 실시

- 당초 법학교육 인증제는 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2005년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을 마련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이외에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를 예정하고,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법학교육인증을 받은 법과대학의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최근 5월에 있었던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 주최로 열렸던 학부 법과대학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간담회에서도 기존 학부법학교육에 대한 법학인증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결의한 바 있음
- **법학교육인증의 주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2000년 법학분야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자체가 주요업무에 속하므로 법학교육인증기준의 마련, 법학교육인증결과와 활용방안의 제시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됨
- 법학교육인증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법학전공자로 채우는 것을 제도화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010-06-19

- 위원구성현황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21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원장	영산대	부구욱
부위원장	-	-
위원	경상대	하우송
	국민대	이성우
	고려대	이기수
	단국대	장호성
	대진대	이천수
	동국대	오영교
	동아대	조규향
	명지대	유병진
	서남대	김응식
	신문대	김봉태
	울산대	김도연
	인하대	이분수
	전남대	김윤수
	제주대	허향진
	조선대	전호중
	중앙대	박범훈
	청주대	김윤배
	한양대	김종량
	한중대	이승일
	홍익대	장영태
자문교수	국민대	안경봉
	부산대	강대섭
	전남대	이철환
	중앙대	장재욱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조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국 · 공립대학발전위원회



좌 장 : 송용호 위원장 (충남대학교 총장)

발 표 : 신희권 지문교수 (충남대학교 교수)

“국공립대학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신 회권(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1. 국립대 법인화 문제

가. 전반적 현황

- 서울대가 총장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2011년 3월에 법인화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하여, 지방 국립대 등 국·공립대학들이 법인화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립대의 법인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및 지방 국립대 고사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및 기초학문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비롯되어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이 사학법인처럼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결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국·공립대 교수회 등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나. 서울대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 안 번 호 : 1806972

* 제 안 자 : 정부

* 제안 일자 : 2009-12-11

* 소관위원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회 부 일 : 2009-12-14 (현재 위원회 계류 중)

* 관련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양 위원회에 공히
2009-12-14에 회부되어 현재 위원회 계류 중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및 제1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설치(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둠.

-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2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9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5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연금적용의 특례(안 부칙 제7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울산과기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6 법률 제8331호]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재성의원등 11인)
2009-08-19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전혁의원등 65인)
2009-06-02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

라. 부산대, 경북대 등의 법인화 준비

1) 부산대

- 부산대의 법인화 추진 선언(2010-01-06)
- (추진경과) 법인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10.3.18)하였으며, 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10.3.24)
※ 법인화연구위원회는 5개 분과(운영체제, 재정회계, 인사조직, 교육연구, 캠퍼스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7월까지 운영예정
- (향후 추진계획) 법인화연구위원회의 법인화방안 연구결과('10.8월말예정)를 토대로, 의견수렴(' 10.9~10월)을 거쳐 ' 12.3월 법인 전환을 목표로 추진

2) 경북대

- 경북대학교의 법인화 추진 선언(2010-04-14)
- 현재 법인화방안 연구위원회를 가동 중.
- (6.11-6.18) 「바람직한 법인화 모형과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그 외 지역거점국립대들 중에서 몇몇 대학(충남대, 전남대, 경상대 등)이 법인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응방안

- 서울대를 제외한 여타 국립대학들의 법인화 움직임은 학내 반발이 심하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 또한 국회에서도 정치적 역학관계 상, 개별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여타 국립대 중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 국립대들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예로서 ‘지방거점 4개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 공동 추진.
- 학교 여건 상 법인화 추진이 어려운 국립대학들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정부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2.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문제

가. 추진 경과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 8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 97.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 ' 00.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제도 도입 : ' 01.1.
-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권고 : ' 02.1.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 02.11.
-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발의(이주호 의원) : ' 05.5.
-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 ' 08.4.~5.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시안)’ 발표: ' 08.5.28
- 공문을 통해 시안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 ' 08.5.28~6.13.
- ‘공투위’와의 간담회(5회) 개최 : ' 08.5.~7.

- 공청회 개최 : ' 08.6.26.
 -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간담회 개최 : ' 08.8.20.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확정 : ' 08.9.22.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법 제정 절차 추진 : ' 08.9.~11.20.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안’ 국회 제출: ' 08.11.21.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안’ (김선동의원등 12인) 발의: ' 08.12.26.
- => 두 법안 모두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

나.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이 충족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의 지원(안 제4조)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관한 사

항과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교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국립대학에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고,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하도록 함.

- 예산의 편성 및 의결(안 제12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안 제22조)

국립대학의 장이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건축시설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안 제23조)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1)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발전기금은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차입금 및 수익사업(안 제29조 및 제30조)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대응방안

- 재정회계법 제정 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우려되므로 대책 필요
 - 재정확충을 위한 등록금 인상 및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상업화 우려
-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국공립대학 공동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문제

가. 추진 경과

- 2000년, 교육학계에서 논의 전개(송기창 등)
 - 2002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권고
 - 2003년 11월,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의원입법 형식 제출
 - 2004년 11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이 의원입법 발의 (박찬석의원)
 - 2008년 9월, 대교협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에 대한 세미나
 - 2009년 5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대한 심포지엄(임해규 의원)
 - 2009년 11월 13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김우남 의원 등 13인) 발의
 - 2009년 11월 23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해규 의원 등 16인) 발의
- => 두 법안 모두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

나. 두 법안의 주요 내용

	김우남 의원 등 13인 발의안	임해규 의원 등 16인 발의안
교부금 재원 (내국세 기준)	- GDP 1.1% 투자 위해 교부율 단계 적 인상 - '11년 6%, '12년 6.5%, '13년 7%, '14년 7.5%, '15년 8.4%	- 100분의 8
보통 교부금 교부기 준	- 국립: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 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 교부 - 공·사립: 국립 교부금 제외하고, 1/2은 학생수, 1/2은 교원수 비율	-국립: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 달액 교부 - 공·사립: 교부금 재원확보 정 도에 따라 전년도 구립 학생 1인 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재학생 수 로 곱한 금액으로 교부함
특별 교부금 교부기 준	-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 -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총액이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 지 방대학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지방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기준을 마련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 금을 교부함
기타		제외: 고등교육기관이 대학평가인 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립대학 내부 구성원 간 또는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 송 진행 등

다. 등록금상한제 법률과 맞물려 대학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법률임

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개선 사항

-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안에 의해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 유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 배제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학정책의 수립 추진 가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단순히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재정지원 요구가 아닌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인할 수 있는 자율조정장치 마련에 초점
- 현재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사립대학 위주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공생하며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함.
 -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보호 방안 강구가 우선인데도 사립대학에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할 경우, 국립대는 재정지원액 감소 우려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사립대학 교원 인건비 지원 반대

4. 국공립대 교직원의 인건비성 수당 정비

가. 주요 내용

- ‘09.6 교과부와 12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집행의 부적정으로 급여보조성 인건비 집행실태 지적
 - 교육 및 연구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급여보조성 인건비 편성 지원
 -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여 타 부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나. 조치 요구사항

- 감사원에서는 ① 1인당 연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②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재정·행정적 제재기준 마련 등

다. 대응방안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직원간 보수격차를 감안하고,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 (인센티브 활용)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명의로 “인건비성 수당을 공식적으로 보수(인건비 항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하는 성명서 내지 건의문 채택 여하?
 - 물론 ‘교원 성과 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게 됨

5.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문제

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경과

-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재정 지원 포물러 펀딩방식 도입(‘08.3)

- 지원대학 : ‘09년 88개교(전체대학의 45%, 평균지원액 30.1억)
- 지원방식 : 대학에 **총액(Block Grant) 교부, 자율 집행**

- ‘10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우수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규모 확대(‘09. 2,649억 → ’ 10. 2,900억: 251억 증)

‘09년도				‘10년도 예산(안)			
구분	사업 내용	예산(억)	지원(개)	구분	사업 내용	예산(억)	지원(개)
일반	■ 교육역량강화	699	31	⇒	■ 교육역량강화	680	30 내외
					■ 학부교육 선도	120	4
					소 계	800	30 내외
광특	■ (지방)교육역량강화	1,950	57		■ (지방)교육역량강화	1,920	60 내외
					■ (지방)학부교육 선도	180	6
					소 계	2,100	60 내외
계		2,649	88	계		2,900	90 내외

- 사업 체계 : 추가지원(선도대학), 기본지원(우수·발전대학)으로 구분
- 포물러 지표 정교화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 진행 : ‘09. 6. ~ ’ 10. 1.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 대학별 소재지,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하여 11개교 “교육 잘하는 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4년, 2+2년)

※ ‘10년 11개 선정됨, ’11년 5개, ‘12년 5개 등’ 12년까지 총 20개교 내외 선정, 지원 예정

- 선도대학은 학사 조직 및 교원 인사,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체계적으로 혁신하여, 대학별로 특화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

※ 학부교육 선도모델(예시)

- 다학제적 전공 기초 교육 및 소양 교육을 총괄하는 학부대학 설립
-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전과 허용, 인성 및 사회봉사 교육 강화, 팀티칭 및 토론식 학습 등
- 졸업인증제도 시행, 진로 및 생애설계 지도, 실무중심 비정규 교육 강화

나. 평가지표(2010년)

■ 지원 대학 선정 어떻게?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은 대학의 성과·교육 여건 지표로 구성된 공식(교육지표 포물러)을 통해 각 대학별 점수를 산출한 뒤,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교육지표는 성과지표(50%)·여건지표(50%)로 구성되며 성과지표로는 취업률(25%)·재학생 충원율(20%)·국제화(5%) 지표가, 여건지표로는 전임교원 확보율(10%)·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1인당 교육비(15%)·장학금지급률(15%)·등록금 인상 수준(5%) 지표가 각각 반영됨.
- 또한 재학생충원율·국제화·전임교원확보율·1인당교육비는 현황지표는 물론 향상도지표도 반영됨. 단 교육대의 경우 국제화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가 10% 반영됨.
- 각 지표값으로는 대학들이 공시한 정보가 활용됨.

■대학별 지원금액?

- 재원배분 포물러에 의해 결정됨
- 재원배분 포물러는 기준경비·규모지수·성과지수·지역계수 등으로 구성된 공식임. 특히 지역 계수가 수도권(3.5)과 지방(6)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지원 금액이 많은 경우가 발생.

■통계 및 정보 오류?

- 2개의 포물러 적용 그룹을 구성해 적용 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 포물러 적용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통계 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최종 검증, 확인.
- 지원 대학 중 오류 정보를 공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회수·차년도 지원 대상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 가해짐.

다. 평가지표 문제에 대한 대응

- 나름대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됨. 그러나 교육 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개발시 대학별 특수성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구성현황 -

국·공립대발전위원회 (22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 원 장	충남대	송용호
부위원장	충주대	장병집
위 원	강원대	권영중
	강릉원주대	한 송
	경상대	하우송
	공주대	서만철
	군산대	채정룡
	대구교대	손석락
	목포해양대	안영섭
	부산교대	김상용
	부산대	김인세
	서울교대	송광용
	서울산업대	노준형
	안동대	이희재
	전주교대	나기연
	진주교대	정보주
	창원대	박성호
	청주교대	김수환
	춘천교대	김선배
	한국체대	김종욱
	한국해양대	오거돈
한밭대	설동호	
자문교수	충남대	신희권
	충남대	명재진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동근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사학법대책위원회



좌 장 : 이강평 위원장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발 표 : 손희권 자문교수 (명지대학교 교수)

사립대학 발전방향과 과제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1. 추진경과
2. 현황 및 문제점
3. 발전방향과 과제

2

추진경과

1.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2. 2010년 4월 한국사립대학총장
협의회 세미나
3. 제18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
률안

3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1.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2.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에 대한 평가

4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1. 제1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2. 제2안: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의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3. 제3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의 편제

5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평가

1. 제1안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제2안이 바람직함
2.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을 통한 사립대학에의 재정 지원은 대학교육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
3. 제3안은 법체계적 장점은 있으나 사학관련 필수사항의 결정 및 현행 사립학교법과 연계된 30여개에 달하는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6

2010년 4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1. 이남식 총장님 발표
2. 이영선 총장님 토론

7

이남식 총장님 발표

1.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2.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안

8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1. 기본 관점: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계
2. 이중 잣대의 적용: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지원에서는 차별
3. 교육제도법률주의의 불충분한 구현: 사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4.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의 불충분한 구분
5. 사학 운영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
 - 1) 개방이사제도의 위헌 소지
 - 2) 대학평의원회제도로 인한 학교 운영 부담
 - 3) 임시이사제도의 남용 여지

9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안

1.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1) 규제의 대상 - 자율과 책임의 주체
 - 2) 사전적 규제 - 사후적 평가와 감사에 의한 철저한 시정 조치
 - 3)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법제화
2.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문제 조항 개정:
 - 1) 정관 자치
 - 2) 개방형이사제도의 폐지
 - 3) 자문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적 설치
 - 4)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이사회 소집 요구 허용
3. 새로운 제도의 법제화: 사립학교진흥법 또는 사립대학진흥법의 제정

10

이영선 총장님 토론

1.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립대학 거버넌스 제도의 개편

11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문제점:
 - 1) 사립대학을 역기능적 공공성을 이유로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
 - 2)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미비는 순기능적 공공성의 부정
 - 3) 사학 지원 및 육성의 선언적 성격
2. 대책:
 - 1) 사립대의 자구, 자정 노력
 - 2) 실질적 지원 요구
 - 3) 사학진흥법 제정: 사립대 경상비 지원 명문화

12

사립대학 거버넌스 제도의 개편

1. 문제점:
 - 1) 개방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회제도의 사학 자율 침해 소지
 - 2) 대학 의사결정과정상의 모순, 부작용 초래
2. 대책:
 - 1) 1안: 개방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회 폐지
 - 2) 2안: 의무가 자율 설치, 자문기구로서의 대학 평의원회

13

2010년 4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1. 황우여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2. 사학지원법(안)의 제안: 이재교 변호사님 안 참조

14

제18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1. 사학의 적립금 규모 제한 및 사학교원의 신분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개방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제도 등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논의 부족

15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2.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의 제정: 이시우 교수님 안
3. 사학진흥법(안)의 제정: 이재교 변호사님 안
4.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및 사학진흥법(안)의 비교

16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1. 개정 방향: 사립대학의 자주성 보장 및 위헌적 요소의 치유
2. 개정 내용:
 - 1) 개방이사제도의 폐지: 현행 개방이사제도는 평등원칙 위반 소지 매우 큼
 - 2)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및 자율적 설치
 - 3) 임시이사제도의 보완

17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의 제정: 이시우 교수님 안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기대 효과

18

제안 이유

1.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필요
2.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고려
3.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4. 사립대학 재정의 취약성 보완
5.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대학 지원
6. 교육재정법률주의의 구현

19

주요 내용

1. 육성 재원의 확보 및 지원 대상 사립대학
2. 학교법인의 책무
3. 사립대학육성위원회의 설치
4. 사립대학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 감액 및 중단
5. 그 밖의 지원
6. 보조금 등의 관리와 관할청의 권한

20

육성 재원의 확보 및 지원 대상 사립대학

1.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 예산에 계정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지원 가능성 규정
3. 지원 대상 사립대학은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함

21

학교법인의 책무

1. 학생의 경제적 부담의 적정화 및 교육여건 개선 노력
2. 사립대학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22

사립대학육성위원회의 설치

1. 권한: 심의기구
2. 조직

23

권한: 심의기구

1.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급 비율, 지원 조치, 감액, 중단 등
2.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 처분 및 행정지원
3. 사립대학에 대한 그 밖의 행·재정적 지원

24

조직

1. 인원: 9인
 - 1) 국회 추천 3인
 - 2) 대통령이 추천하는 민간 경제계 및 학술위원 3인
 -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4) 기획재정부장관
 - 5) 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2. 위원장: 공동위원장
 - 1)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경제계 및 학술계 위원 1인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임기:
 - 1)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2년
 - 2)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25

사립대학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 감액 및 중단

1. 국가는 사립대학의 장에게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적 경비 중 100분의 50 이상의 보조금 지급
2. 구체적 보조금 지급비율은 사립대학육성위원회에서 심의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경상적 경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 보조금 지급액에 포함 가능
4. 경상적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법령 위반, 정관이나 학칙 위반, 현저하게 낮은 학생 충원율, 불건전한 재정상황, 부적정한 기타 교육여건 및 관리경영의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중단

26

그 밖의 지원

1.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2. 개인 기부금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 공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부지에 사립대학이 들어서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성원가로 사립대학에 부지 제공
4. 국·공유 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가능
5. 해산 법인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 인정

27

보조금 등의 관리와 관할청의 권한

1. 보조금과 지원금은 교비회계에 편입시킴
2. 사립대학은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함
3. 관할청의 권한:
 - 1) 보조와 지원 관련 업무 및 회계 상황 보고 요구
 - 2) 예산 변경조치 권고
 - 3) 필요 시에 조사 및 감사

28

기대 효과

1. 전체 사립대학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
2. 사립대학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
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억제
4. 소득의 재분배
5.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대우의 향상
6. 사립대학 간의 경쟁의 제고
7.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의 확보
8.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9. 사립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기여도 제고
10. 고등교육활동의 외부효과

29

사학진흥법(안)의 제정: 이재교 변호사님 안

1.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분쟁해결제도 제선
3. 재정 개혁
4. 사학에 대한 지원
5. 교원의 신분 보장

30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설립의 자율화 확대
2. 정관에 관한 자율성의 확대
3. 임원에 대한 사전 통제의 폐지
4. 개방이사제도의 폐지
5. 대학평의원회의 임의기구화

31

분쟁해결제도 개선

1. 법원에 의한 임원 해임 제도
2.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정상화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32

재정 개혁

1. 회계 통합
2. 잔여재산 처분
3. 과실송금 허용

33

사학에 대한 지원

1. 교육비 지원
2. 무상 임대
3. 대부 사업

34

교원의 신분 보장

1. 종교 사학 존중
2. 교원임면권
3.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기구화
4. 교원결격사유의 확대
5. 교원 징계

35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및 사학지원법(안)의 비교

1. 사립대학육성특별(안)은 기존 사립학교법의 개정 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사학지원법(안)은 사립학 교법의 폐지를 전제로 함
2.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사립대학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사학지원법(안)은 기존 사학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해소와 사립대학에의 지원을 동시에 추구 함
3. 지원 내용이 사립대학육성특별(안)은 교육비 등 보 조금 지급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사학지원법(안) 은 무상 임대 및 대부 사업까지 확대되어 있음

36

발전방향과 과제

1. 사립학교법의 위헌적 요소 개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동시 추구
2. 개방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 임시이사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사립대학의 자주성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들의 개정에 초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4. 국회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의 공조체제 구축

37

▶ 감사드립니다

38

- 위원구성현황 -

사학법대책위원회(23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 원 장	서울기독대	이강평
부위원장	광주대	김혁중
위 원	건동대	이중수(직대)
	경동대	신동진
	경운대	김향자
	관동대	박희중
	광운대	김기영
	극동대	류기일
	남부대	조성수
	대구한의대	변정환
	동양대	최성해
	부산장신대	박종균(직대)
	서경대	최영철
	서울신학대	목창균
	서울장신대	문성모
	세명대	김유성
	영동대	송재성
	인제대	이경호
	침례신학대	도한호
	칼빈대	길자연
	평택대	조기홍
	한영신학대	한영훈
호서대	강일구	
자문교수	서울여대	이시우
	명지대	손희권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보금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좌 장 : 이현청 위원장 (상명대학교 총장)

발 표 : 배호순 자문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10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주제: 언론사의 대학평가 문제

2010년 6월 24일

발표자: 배호순(서울여대)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목 차 -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2 현안 및 문제점

3 해결방안의 탐색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중앙일보

○ 중앙일보 평가에 관한 개요

- 1994년부터 창간 기념사업으로 시작
- 종합평가는 매년 실시, 학과평가는 매년 새로운 학과(학문분야)를 추가하면서 5년 주기로 실시
- 첫해인 1994년에는 종합순위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영역별 순위만을 발표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대학별로 종합순위를 발표
- 평가대상: 산업대,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신설 대학이나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한 122개 대학
-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매년 변화

3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중앙일보

○ 2009년의 대학평가

- 2007년에 평가영역이 5개에서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 사회 진출 등 4개 영역으로 축소됨



4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중앙일보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부문, 평가지표 및 가중치(2009년도 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교육여건 및 재정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당 학생수(15) ·학생당 장학금(10)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5) ·학생당 교육비(15) ·세입중 납입금 비중(10) ·교수확보율(10) ·세금 대비 기부금(5) ·기숙사 수용률(5) ·중도포기율(5) ·교육비 환원율(10) ·학생충원율(5)
국제화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이상 외국인교수 비율(20)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10)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 ·학위 과정 등록외국인 학생 비율(15) ·영어강좌 비율(20)

5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중앙일보

(표 계속)

평가부문	평가지표
교수 연구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15) ·교수당 자체 연구비(10) ·기술이전 수입액(10) ·인문사회체육교수당 SSCI,A&HCI 게재수(20) ·과학기술교수당 SCI논문 게재수(20) ·최근 5년간 교수당 SSCI, A&HCI, SCI 논문 피인용수(10) ·최근5년간SSCI, A&HCI, SCI 인용 10회이상 논문수(5) ·과학기술교수당SCI논문임팩트팩터(5) ·지적재산권 등록현황(10) ·인문사회교수당 국내논문수(15)
평판, 사회진출도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율(10) ·발전가능성이 큰 대학(15) ·졸업생의 직무수행 능력(10) ·기부하고 싶은 대학(15) ·거래스, 코스닥 상장업체 임원수(8) ·졸업생의 리더십, 조직 융화력(10)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수(5)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10) ·졸업생의 자기계발(10) ·진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15)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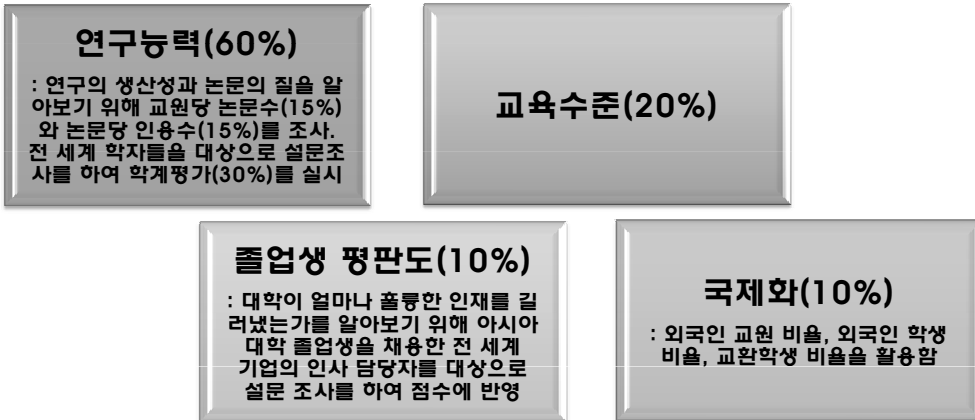
* 출처: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http://www.jedi.re.kr/front/home/>

6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조선일보

- 조선일보가 영국의 대학 국제 평가 기관인 QS와 함께 2009년부터 아시아 대학 평가 실시
- 총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평가 지표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대학의 순위를 결정하여 공표



7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가. 국내의 언론사 평가(개론)-조선일보

조선일보 평가지표

교원당 논문수	논문당 인용수	학계평가	교원당 학생수	졸업생 평판도	외국인 교원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교환학생 비율 (수용)	교환학생 비율 (파견)
15%	15%	30%	20%	10%	2.5%	2.5%	2.5%	2.5%

* 출처: 조선일보 2010년5월13일 기사 내용을 편집함

- 평가 지표는 중앙일보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평가결과를 점수로 합산하여 공표하는 방식은 기존의 언론기관 평가와 유사함
- ⇒ 언론사가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8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나. 외국의 언론사 평가의 현황-US News & World Reports

○ 현황

- US News & World Reports(이하 US News)의 대학 평가는 1987년부터 학부 평가(가을)와 전문대학원(봄) 평가로 이원화해 매년 두 차례 발표함
- US News 대학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평판도 조사임
- US News 는 대학의 서열화가 대학의 상대적인 강약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원자들이 대학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

9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나. 외국의 언론사 평가의 현황-US News & World Reports

평가 방식

- 대학을 평가하여 서열화하기 위해 각 대학을 범주에 따라 분류함
- 대학의 기능에 따라서는 연구중심의 종합대학과 교양대학으로, 지역적으로는 다시 북부, 남부, 서부, 중서부로 나눔
- 각 대학은 동일 범주 내에서만 순위가 매겨지고 16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를 모으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김
- 대체로 범주별 25%만이 순위가 매겨지며, 나머지는 집단별(2류, 3류, 4류)로 분류됨
-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① 대학을 목적과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② 대학의 수월성에 관한 16개 지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③ 각 범주별로 가중점수에 따라 대학에 대한 순위를 매김

10

1. 언론사 대학평가의 현황

나. 외국의 언론사 평가의 현황 - The Times Good University Guide

- 영국의 The Times Good University Guide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가를 실시

평 가 방 식

- 대학순위평가의 자료는 영국 전체의 고등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배포를 담당하는 고등교육통계청(HESA)으로부터 입수
- 평가지표는 평가영역의 구분 없이 수업 만족도, 연구평가, 신입생 수준, 학생/교수 비율, 도서관 및 정보화 경비, 우수졸업생 비율, 취업·진학자 비율, 졸업 예상률 등 총 9개의 지표로 구성
- 9개의 평가 지표 점수는 총점으로 합산되며, 각 지표 점수는 표준화점수로 환산됨. 평가 지표 중 수업 만족도와 연구 평가 지표는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1.0의 가중치를 부여

11

2. 현안 및 문제점

평가 전문성 및 타당성 부족

- 진정한 대학교육 속성 및 질적 수준 평가에 소홀, 대학의 변화, 발전 등과 교육의 과정 변수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지 미약함
- 객관성 결여: 제한된 근거자료로 상식적 판단

대학 획일화/평준화 유도; 천편일률적 대학구조 유도 → 대학 특성화 저해

- 각기 다른 관점에 입각한 평가 → 좋은 평가 결과 추구하다가 개별화 및 특성화 어렵게 된다는 점, 획일화되고 특성없는 대학들 양산 가능성(평가가 대학교육을 주도하고 대학이 평가에 예측되는 현상 가중)

대학인들에게 과도한 부담 가중

- 단순한 준거(기준)에 입각한 상대적 비교경쟁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음 → 그로 인하여 과시형, 형식과 실적 위주의 대학교육 형태 유발
-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맞춤형 개인별 진로지도와 인생지도가 아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12

2. 현안 및 문제점

상업적 목적을 중시하여 대학 간 과도한 경쟁 부추기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

-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의 요구(대학선택 관련 정보와 진로 정보 등)에 적극적으로, 만족스럽게 부응하기 어려움; 결국에는 등록금 인상 유도

각기 다른 평가목적과 준거체제 사용

- 평가영역 및 비중이 각기 달라 일관성 및 공통점 찾기 어렵다. 매년 준거체제(지표, 기준, 비중 등)가 달라지고 있어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대학평가 관련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언론사 평가에 대한 대학의 입장 변화의 문제

- 2003년 기획처장협의회에서 중앙일보 평가에 대해 “평가지표 자료 제출 협조 거부”라는 입장에서 2004년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 변화를 보임

13

3. 해결방안의 탐색

중점 고려사항

- 대학평가의 목적 및 명분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매우 부분적이며 제한적으로만 달성, 상업적 목적 중시
- 대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가?
 -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면에만 치중
-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매우 제한적으로 기여한 셈
- 대학교육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 매우 어려운 실정 ; 질적 수준, 교육의 과정변수에 대한 평가에 무관심
 - 대학의 입장을 중시하지 못한 일방적인 평가행상 추진

14

3. 해결방안의 탐색

대학의 대응 방안

- 언론사의 평가 명분과 상업적 목적추구 문제; 평가의 질 문제, 평가의 영향력 문제, 긍정적/부정적 효과 혼재
 - 대학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대학교육 목표 달성도(성취수준) 공지 등 매우 제한적인 기능
 - 교육의 질적 수준, 교육의 과정, 변화 및 발전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상 취약점 존재
- 대학별 개별적 대응 또는 집단적 대응; 적극 참여 또는 소극적 참여, 불참; 부분적이며 제한적 참여 또는 전면적 참여 등에 관한 대교협 차원의 대응 필요성 논의 필요

15

3. 해결방안의 탐색

대학의 대응 방안

- 대학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수행에 중점을 두며 언론사 평가 명분에 최소한의 성의 표하는 태도를 보이는 패턴 조성 필요
 - 일관성 있게 대학 특성화하며 질 관리에 중점 ; 사회적 책무 중시하며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
 - 일반인 및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응 필요
 - 언론사의 상업주의적 평가, 포퓰리즘적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은 대학의 권위에도 문제
 - 개별 대학의 비전이나 창학 이념 등에 크게 벗어난 평가에는 대응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에만 집중

16

3. 해결방안의 탐색

대학의 대응 방안

- 모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대응하며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대학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본연의 역할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바람직함
- 언론사 평가를 이용한 대학의 과도한 홍보에 지나친 투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대학인들이 깨닫고, 만족스런 평가결과에만 치중하여 정량적 연구 실적이나 외형적/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이나 성과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언론사 평가에 대교협을 통한 간접적 대응 방안에 관한 총장 협의 필요

17

감사합니다.

18

- 위원구성현황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40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원장	상명대	이현청
부위원장	호원대	강희성
위원	계명대	신일희
	고신대	김성수
	광신대	정규남
	광주교대	박남기
	광주여대	오장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원우
	나사렛대	임승안
	대구대	홍덕률
	대구예술대	김정길
	덕성여대	지은희
	동덕여대	김윤식(직대)
	삼육대	김기곤
	서울교대	송광용
	서울산업대	노준형
	성결대	정상운
	성신여대	심화진
	세종대	박우희
	안동대	이희재
	영남대	이효수
	영남신학대	진희성
울산과기대	조무재	
원광대	나용호	
위덕대	배도순	
전북대	서거석	

	전주대	이남식
	진주교대	정보주
	청운대	이리형
	포항공과대	백성기
	한경대	김성진
	한국교원대	권재술
	한국국제대	손정웅
	한국외국어대	박 철
	한국해양대	오거돈
	한려대	서복영
	한성대	정주택
	한일장신대	정장복
	호남대	장병완
	호남신학대	차종순
자문교수	서울여대	배호순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현석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국제화대책위원회



좌 장 : 박동순 위원장 (동서대학교 총장)

발 표 : 최홍석 지문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 글로벌 고등교육의 추세
- ◆ 해외 캠퍼스의 다양한 형태
- ◆ 외국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현황
- ◆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현황
- ◆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2010. 6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최흥석

I. 글로벌 고등교육의 추세

I. 글로벌 고등교육의 추세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OECD Countr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oming Decade, Marijk van der Wende 인용)

Open Networking	▶	교육시장 개방, 시스템의 통합 ex) Bologna Process
Serving Local Communities	▶	국제화의 지역화 경향 ex) AUN, EUA, APAIE 등
New Public Management	▶	고등교육 규제 완화 및 시장 경제 논리 도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Higher Education Inc	▶	수익 창출에 기반을 둔 경쟁 심화 및 Core Business Strategy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기관 별 특성화 진행

1. 교육시장개방으로 고등교육기관 역시 글로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
2. 해외 대학들은 아시아, 중동 지역에 해외캠퍼스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3. 반면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는 아직까지 캠퍼스 시설 확충,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학생 유치, 영어 강좌 비율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II. 해외 캠퍼스 건립의 필요성

1. 해외 캠퍼스의 설립은 현지 학생들에게 유학 비용의 절반 정도 비용으로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
2. 국내 대학의 경우 해외 캠퍼스의 설립을 통해 자교 학생의 대량 파견이 가능하며, 동시에 현지 학생들의 다수 유치 가능
3.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제공

III. 해외 캠퍼스 건립의 세계적 추세

1. 영국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의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New Trends and Directions”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건립된 해외 캠퍼스는 162개교로 2006년 9월 기준 114개교에서 3년 간 약 43% 증가함
2. “North-to-South”에서 “North-to-North”, “South-to-South”로 변화 -> 개발도상국들의 해외 캠퍼스 건립을 통한 고등교육 수출 노력 강화
3. 주요 해외 캠퍼스 건립 국가

국가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기타
건립 건수	78	14	13	11	11	35

4. 주요 해외 캠퍼스 유치(host) 국가

미국	UAE	중국	싱가폴	카타르	기타
유치 건수	40	15	12	9	86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해외 캠퍼스의 다양한 형태

구분	내용	주요 사례
해외 분교	-부지 매입, 캠퍼스 시설 건립 등을 통한 실질적 분교 건립 -현지 정부의 정식 설립인가 취득 필요 -Main Campus에서 제공하는 과정 중 일부를 특성화, 전문화한 정규 과정 제공	-University of Nottingham : Ningbo, Malaysia Campus -Cornell University : Qatar Campus
해외 사무소	-현지 대학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 -주로 현지 학생 대상 홍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목적임 -각종 Fair, 유학생 박람회 개최, 현지대학과의 협정체결 등 활동	-고려대학교 : 중국인민대학 해외사무소(예정) -한양대학교 : 상하이 센터 (2007. 10)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한 해외 거점 캠퍼스 구축	-해외 대학에 기숙사 건립을 통한 거점 캠퍼스 구축 -학생의 대량 파견이 가능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교류 / 연구 협력이 가능	-고려대학교 : UBC, RHUL 기숙사 설립
특정 프로그램의 해외 유치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정 프로그램의 해외 유치 -인턴십 및 연구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고려대학교의 Global Entrepreneur Program	-NUS : Bio Valley, Silicon Valley Internship -한국외국어대학교 : 워싱턴 DC, 글로벌 최고위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국제처

III. 외국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현황

I. 미국 주요 대학의 해외 개설 학위 과정 현황

미국 주요 대학의 해외 개설 학위 과정

지역		미국 대학	분야	
아시아	싱가포르	SUNY버펄로 분교	경영학-커뮤니케이션	
		MIT	공학	
		라스베이거스대	호텔경영학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일본	카네기 멜런대	IT	
	중국	포덤대	MBA	
중동	카타르	뉴욕공과대	학부 과정 전반	
		홍콩	조지워싱턴대	교육학
		아랍에미리트	버지니아코먼웰스대	아트 디자인
			코넬대	의학
			텍사스 A&M	공학
	카네기 멜런대	경영학-컴퓨터공학		
	조지타운대	국제관계		
	뉴욕대(예정)	인문과학		
라스베이거스대(예정)	호텔경영학			
유럽	크로아티아	로체스터공과대	관광경영	
	벨기에	보스턴대	경영학-행정학-경제학 등	
	영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체코	로체스터공과대	공학	

<2008. 3. 30, 중앙일보 자료 인용>

고려대학교 국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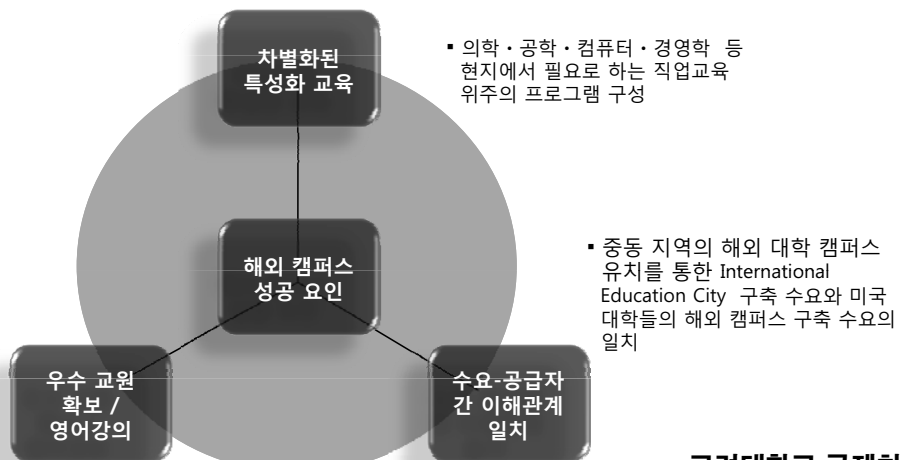
III. 외국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현황

I. 미국 주요 대학의 해외 개설 학위 과정 현황

1. 해외 캠퍼스 설립 동기

- 가. 2001' 9.11 사태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 급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시행
- 나. 미국 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이를 대체할 수요 창출 필요
- 다. International Profile의 향상
- 라. 정부 지원금 유치를 위한 Top 수준의 연구원 유치

2. 성공 요인



고려대학교 국제처

I. 미국 주요 대학의 해외 개설 학위 과정 현황

3. 주요 사례

가. 성공 사례

Cornell University 사례

- 2001년,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in Qatar (WCMC-Q) 개교
- 2002년 Pre-Medical teaching, 2004년 정규 Medical Program 운영 시작
- 2009년 기준 재학생 수 262명(Pre-Medical 과정 포함), 교원 수 56명
- 주 성공요인
 - 현지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Ministry of Health, Qatar Foundation, Hamad Medical Operation 등)
 - 미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동일한 수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우수 학생 유치

나. 실패 사례

George Mason University 사례

- 2005년, UAE, Ras al Khaymah 캠퍼스 개교
- 2006년 학부생 200명 모집을 목표로 biology, business, engineering 과정 개설
- 2007년 등록 학부생 57명 (biology 3명, business 27명, engineering 27명)
- 2009년 9월, Ras al Khaymah 캠퍼스 운영 중단
- 주 실패요인
 - UAE 정부 검열로 인해 교과서, 참고서 등의 주문 등에만 수개월 소요
 - George Mason 대학 입학 요건에 맞는 SAT 점수와 영어 능력을 갖춘 현지 학생 유치의 실패

II. 기타 주요 대학의 해외 개설 학위 과정 현황

1. 싱가포르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NUS는 현지 주요 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현지 대학 수강 -> 현지 Internship' 전략 채택

국가	지역	비고
인도	Bangalore	- Internship 위주의 캠퍼스 운영 - 3~6개월간 "India Familiarization" Workshop 참가를 통해 벤처기업, 비영리 기구, 다국적 기업등에서의 인턴십 수행
스웨덴	스톡홀름	- 2005년 5월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MOU 체결 - KTH, 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과 협력하여 주로 현지 기업 Internship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
중국	상해	- 2004년 1월, 복단대와 협력하여 첫 프로그램 시행, 8명 파견 - 상해 주요 기업에서의 Internship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약 50여명이 본 프로그램 참여
중국	북경	- 2009년 8월, 칭화대와 협력하여 첫 프로그램 시행 - 파견 학생은 칭화대에서 수강 후 Technological sciences parks of Beijing에 소재한 회사에서 Internship 수행
미국	필라델피아, Bio Valley	- 2003년 1월, 14명 학생 파견을 시작으로 매년 30명 파견 - UPENN에서 수강 후 Internship 수행
미국	캘리포니아, Silicon Valley	- 2002년 1월, 10명 학생 파견을 시작으로 매년 50명 파견 - Stanford University에서 수강 후 Internship 수행

IV.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현황

Global KU
Frontier Spirit

I. 해외 분교 설립 및 계획 현황

대학명	계획예정지	비고
명지대학교	미국, 뉴욕	- 건축 분야 특화 캠퍼스 구축 계획 - 해외 분교 설립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분교 설립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아 중단 (학생 1천명 공부할 수 있는 20,000㎡ 부지 확보)
한양대학교	파키스탄	- 파키스탄 정부의 시설, 부지 지원 - 정보통신, 기계공학 등의 과정 개설 예정 - 경제위기로 인한 파키스탄 국고 동결, 국내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추후 진행 예정
송실대학교	베트남, 호치민 시	- 현지에서의 학교 부지 제공 예정 - IT 분야 특성화 캠퍼스 구축 -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캠퍼스 조성
ICU	리투아니아	- 분교 설립 및 운영비의 리투아니아 정부 전액 투자 - 온·오프라인 이용 강의 및 공동 학위 과정 개설 - 리투아니아 정부가 EU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확보가 늦어지며 지연

고려대학교 국제처

V.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발전방향

Global KU
Frontier Spirit

I. 문제점

1. 해외 분교 설립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1)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대학 임의로 처분 불가
- 2) 교비회계의 학교 이전 혹은 분교 설립에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 3)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재산 운용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대학의 해외 진출이 어려움

나. 고등교육법 - 대학설립운영 규정

- 1) 해외 분교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내 분교 설립 시와 동일 기준 적용
- 2) 해외 분교의 최소 면적은 20,000㎡ (학생 1,000명 수학 가능)

2. 현지에서의 대학 설립 인가 및 인증 문제

- 가. 국가별로 설립 인가 및 인증 절차가 다양함
- 나. 대학 설립 인가 및 인증에 대한 자문 역할 담당 기관의 부재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향후 발전방향

1.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가. 해외 분교 설립 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

나. 대학의 해외 캠퍼스 건립에 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주요 거점 국가와의 해외 캠퍼스 설립에 관한 MOU 체결

다. 법적 자문 기관 설치

라. 주요 해외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 성공사례 등의 수집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

2.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분야로부터의 단계적 시행

가. NUS의 사례와 같이 해외 주요 협정대학을 이용한 branch campus 구축

- 부지 매입, 건물 임대 등 막대한 재정 투입 없이 효과적인 해외 캠퍼스 구축 가능

나. 해외 사무소, 특정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한 충분한 홍보 및 학생 수요 유치 후 분교 건립 진행

다. 현지 유관기관 (국가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과의 사전 협력을 통한 분교 건립 기반 구축

- ex) Cornell University 사례

고려대학교 국제처



Thank You

- 위원구성현황 -

국제화대책위원회(23명)		
구 분	소속대학명	성 명
위원장	동서대	박동순
부위원장	한동대	김영길
위원	경남대	박재규
	대불대	문석남
	루터대	김해철
	목원대	이요한
	배재대	정순훈
	부산가톨릭대	윤경철
	부산외국어대	유선규
	성공회대	양권석
	성민대	이강무
	순천대	정순관(직대)
	안양대	김승태
	용인대	김정행
	예원예술대	차종권
	장로회신학대	장영일
	총신대	정일웅
	추계예술대	임상혁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한국항공대	여준구
	한남대	김형태
	한세대	김성혜
협성대	최문자	
자문교수	경북대	권선국
	고려대	최홍석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매튜버트, 박민아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업무보고



대학인증평가 추진경과



이 영 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

업무보고 : 대학평가인증 추진 경과

2010. 6.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목차

- I 평가 · 인증제의 배경
- II 평가 · 인증제의 추진 경과
- III 평가 · 인증/컨설팅의 기본 방침
- IV 평가 · 인증의 내용 및 방법
- V 향후 추진 계획



I 기관평가 · 인증 도입의 배경

I. 평가 · 인증제의 배경

1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동향**

● 해외 유학 고등교육 인구의 급증
지난 15년간 15배 증가

연도	인구 (명)
2000	500,000
2005	1,500,000
2010	2,300,000
2025	7,500,000

고등교육 수요자 보호

● 볼로냐 프로세스
Bergen 회의 (2005.5.19)
EU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 U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2005.12.30)

● 국가차원 : 국가 경쟁력 = 고등교육 경쟁력

● 대학차원 : 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브랜드 가치 창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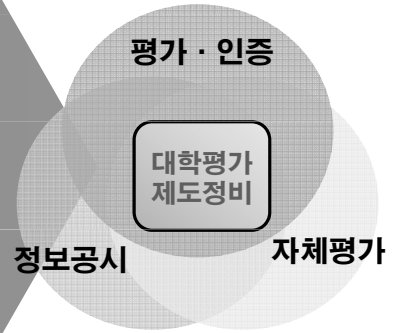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정비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 5. 제정 : 13개 항목 61개 사항 공개 의무화

고등교육법 11조의 2 평가 신설
2007. 10. 평가인증 기관 정부지정 도입
자체평가의 의무화, 평가결과와 행·재정 연계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규칙
2008. 9. 제정 2년 주기 대학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2008. 12. 제정 외부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제시



II 평가·인증 기관 신청 추진 경과

1 2009년도 주요 추진 경과

2009.6

- 고등교육 평가·인증 기구 지정에 대한 정부 고시(6. 30.)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6. ~ 9.)

2009.9

- 부설 기구화에 대한 서면이사회 실시 및 확정 (9.16~21)

2009.10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상정(안) 협의 (10.27)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개최 (10.28)

2009.11

- 제37차 대학평가인증위원회 개최 (11.19)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교과부 제출 (11.27)

2009.12

- 교과부, 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 서면심사 (12.21~23)
- 교과부, 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 현장실사 (2010.1.7)

3

2 2010년도 주요 추진 경과

2010.2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실사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2.12)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실무위원과 대교협 관계자 간담회 (2.17)

2010.3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실무위원과 대교협 관계자 간담회 (3.15)

2010.4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실무위원과 대교협 관계자 간담회 (4.14)
-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협의회 (4.21)
- 원격대학 전문가 및 대학평가관계자 회의(4.29)

2010.5

- 일반대학평가관계자 회의 (5.6), 일반대학편람 공청회 (5.13)
- 교육대학 평가인증 관련 대학평가 관계자 회의 (5.10)
- 원격대학 및 교육대학 평가인증 관련 평가담당자 협의회 (5.20)

2010.6

- 제38차 대학평가인증위원회 개최 (6.1)

4



III

평가 · 인증/컨설팅의 기본 방침

Ⅲ. 평가 · 인증/컨설팅의 기본 방침

1

대교협 대학평가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

- 20년 이상의 대학평가 사업주진 경험
 - 교육 여건 개선, 교수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 회원 대학 중장 및 대학 본부 협조의 용이성
- 대학교수 중심의 평가위원 인력 풀 구성가능

Weakness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 온정주의 평가
- 구조화된 대학평가 패러다임
 - 대학의 특성 미 반영, 대학의 획일화 등

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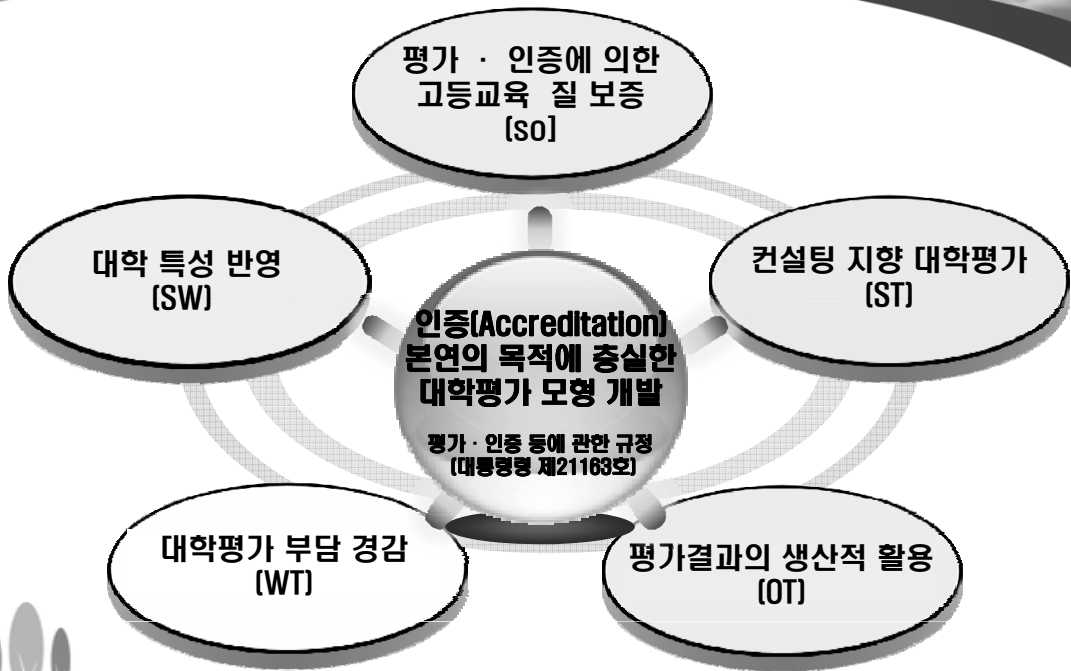
- OECD/UNESCO 등 고등교육 질 보장 기제로써 대학평가의 필요성 강조
- 정부의 평가관련 법령 정비
 - 정보공시, 대학자체평가 의무화, 평가 · 인증의 도입

Threat

- 평가비용 대학 부담 및 평가결과 활용 미흡
- 다양한 대학평가에 의한 대학의 평가부담 과중
- 언론사의 대학 순위평가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2

평가·인증/컨설팅의 핵심 추진 과제



3

추진과제별 평가·인증/컨설팅의 기본 방침



4 추진과제별 평가·인증/컨설팅의 기본 방침

- 일반적인 평가 준거를 선택적 활용 및 추가 가능
(※ 증빙 관련 등 사전 협의)

대학의 특성 반영 평가

- 대학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 컨설팅
- 개선 사항 보완을 위한 대학 교육 질 제고 기반조성 컨설팅

컨설팅 지향 평가 실시

평가 인증 (ISO)

- 피평가 대학 중심 평가 시행
- Paper-less 평가 지향
- Authentic 평가 실시

대학의 평가부담 경감

- 우수 사례 발굴확산, 정보 공유
- 평가결과 정부 활용 방안 협의

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

5 2주기 대학 종합평가와 평가·인증 방안의 비교

구분	2주기 대학종합평가	평가·인증제 방안
평가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구성: 평가영역(6)/평가부문(22)/평가항목(55)/평가지표(170) + 5단계 평가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구성: 평가영역(6)/평가부문(17)/평가준거(54)
자기점검평가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점검 평가보고서 작성의 과중한 부담: 약 700페이지 분량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점검평가보고서 작성의 최소화: ● 평가준거(54)의 2/3는 정보공시 자료, 대학홈페이지 탑재 자료, 대학요람 등 책자 및 규정집, 대학보관 문서자료에 의한 평가
평가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추천 동료교수 중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영역별 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전달중심 평가위원 교육: 서면평가 워크숍, 현지 방문평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교육 강화: 상세한 평가 매뉴얼을 활용

5

2주기 대학 종합평가와 평가·인증 방안의 비교

구분	2주기 대학종합평가	기관평가인증제 방안
현지방문평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을 원칙으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활동의 경우: 2~3일 ● 평가인증과 컨설팅 보고서를 희망하는 경우: 2~3일+α
평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비용 전액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비용 정부와 협의 중
결과 판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별 가중치 적용 점수합산 상대적 비교 가능 ● 최우수/우수/보통/개선요망 등 등급 판정 ● 평가결과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불인증 판정: 평가인증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평가 ●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활용 적극적 추진



IV

평가·인증 내용 및 방법

1 평가 · 인증 내용 구성 체계

구분	평가내용 분류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내용별 충족기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표시방법
평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운영 및 교육활동 등 평가내용에 대한 대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이 충족 해야 할 최소 요구 수준 판단 근거제시 	1 [1단계]
평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영역별 하위 평가 내용 		1.1 [2단계]
평가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최소 요구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점검 및 진단 사항 		1.1.1 [3단계]

2 대학 유형별 평가 · 인증 내용 및 방법

● 일반 대학 평가내용 구성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 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 준거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 시설	4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2		4.2 교육지원 시설	3
	1.3 자체평가	1		4.3 도서관	1
2. 대학 구성원	2.1 교수	8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3
	2.2 직원	3		5.2 재정 편성 및 집행	3
	2.3 학생	4		5.3 감사	2
3. 교육	3.1 교육과정	7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2
	3.2 교수·학습	3			
	3.3 학사관리	4			
	3.4 교육성과	3			

6개 평가 영역, 17개 평가 부문, 54개 평가 준거

2

대학 유형별 평가 · 인증 내용 및 방법

● 교육대학 평가내용 구성 체계

5개 평가영역	12개 평가부문	42개 평가 준거
1. 교육목표 및 성과	1.1 교육목표	3
	1.2 교육의 성과 및 만족도	1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5
	2.2 수업	4
	2.3 교육실습	3
3. 교수	3.1 교수의 확보 및 운용	1
	3.2 교수의 능력개발	3
4. 학생	4.1 학생선발	3
	4.4 봉사활동	1
5. 학교경영과 지원체제	5.1 행정지원	2
	5.2 재정지원	4
	5.3 교육시설	2

13

2

대학 유형별 평가 · 인증 내용 및 방법

● 원격대학 평가내용 구성 체계

6개 평가영역	13개 평가부문	48개 평가준거
1. 교육계획	1.1 교육목표	4
	1.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2. 교수 및 학생	2.1 교수 확보	7
	2.2 학생 지도	3
3. 원격 수업설계 및 운영	3.1 원격 수업설계	3
	3.2 원격 수업운영	4
4.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4.1 교육콘텐츠 개발	3
	4.2 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4
5. 원격교육용 설비와 정보시스템	5.1 원격교육 시설	3
	5.2 원격교육 설비	3
	5.3 원격교육 시스템	4
6. 경영 및 재정	6.1 경영	2
	6.2 재정	5

1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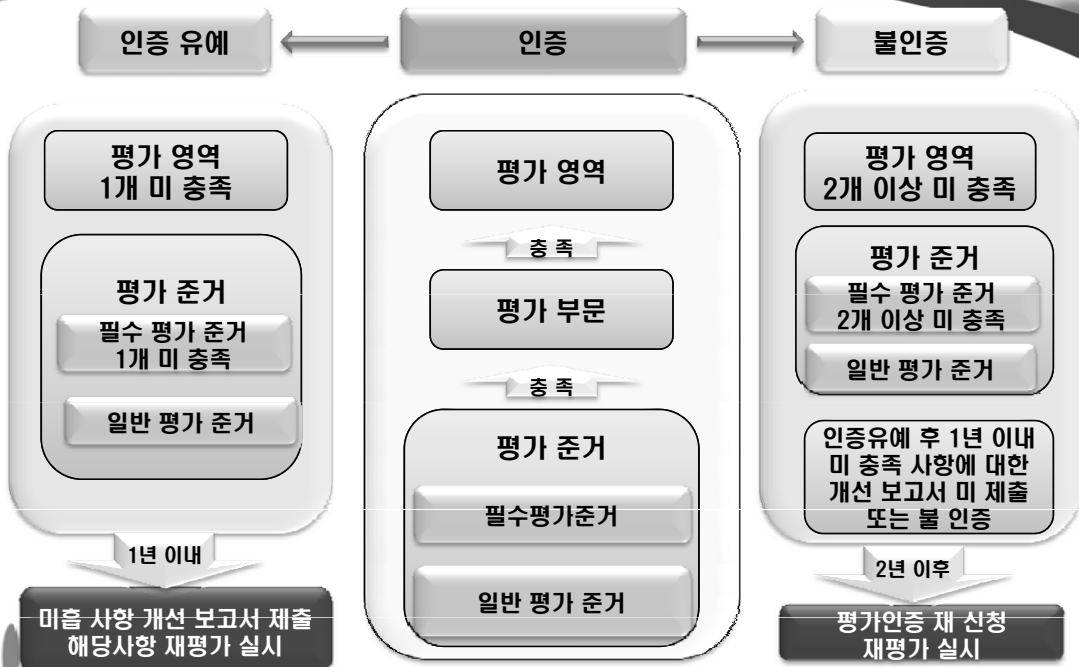
실제 자료 평가와 자기 점검 보고서 작성 비율

- 근거 자료를 활용한 평가를 통한 대학평가 부담 경감
- 평가활용 주요 자료 : 정보공시, 자체평가 보고서, 대학요람 및 교육과정 편람 등 대학 보유 자료, 대학 홈페이지 탑재 정보 등



4

평가 · 인증 유형 및 판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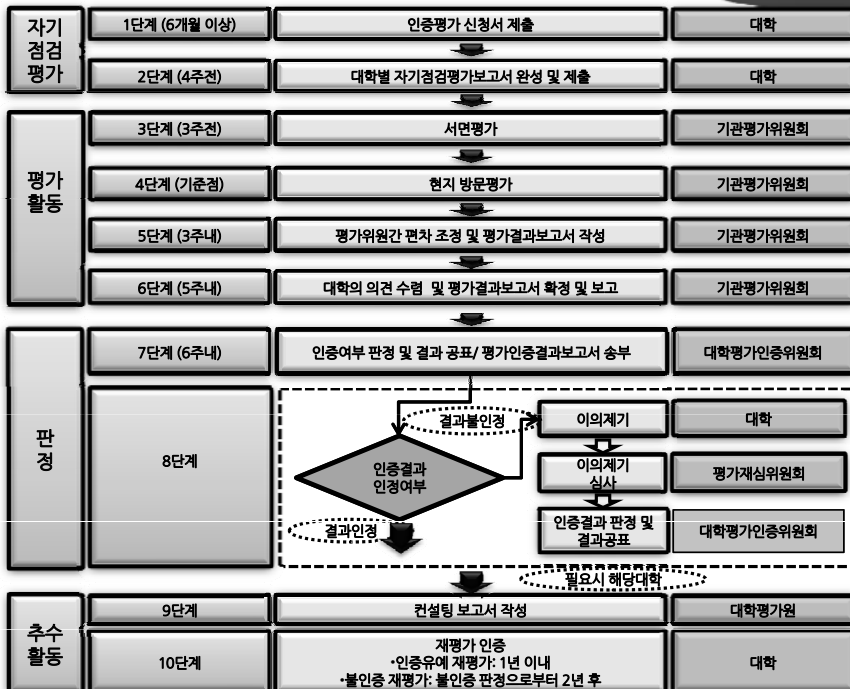


5 필수 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

법령 요구 사항 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지표 선정
해당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필수 평가 준거로 선정 => 최소 요구 수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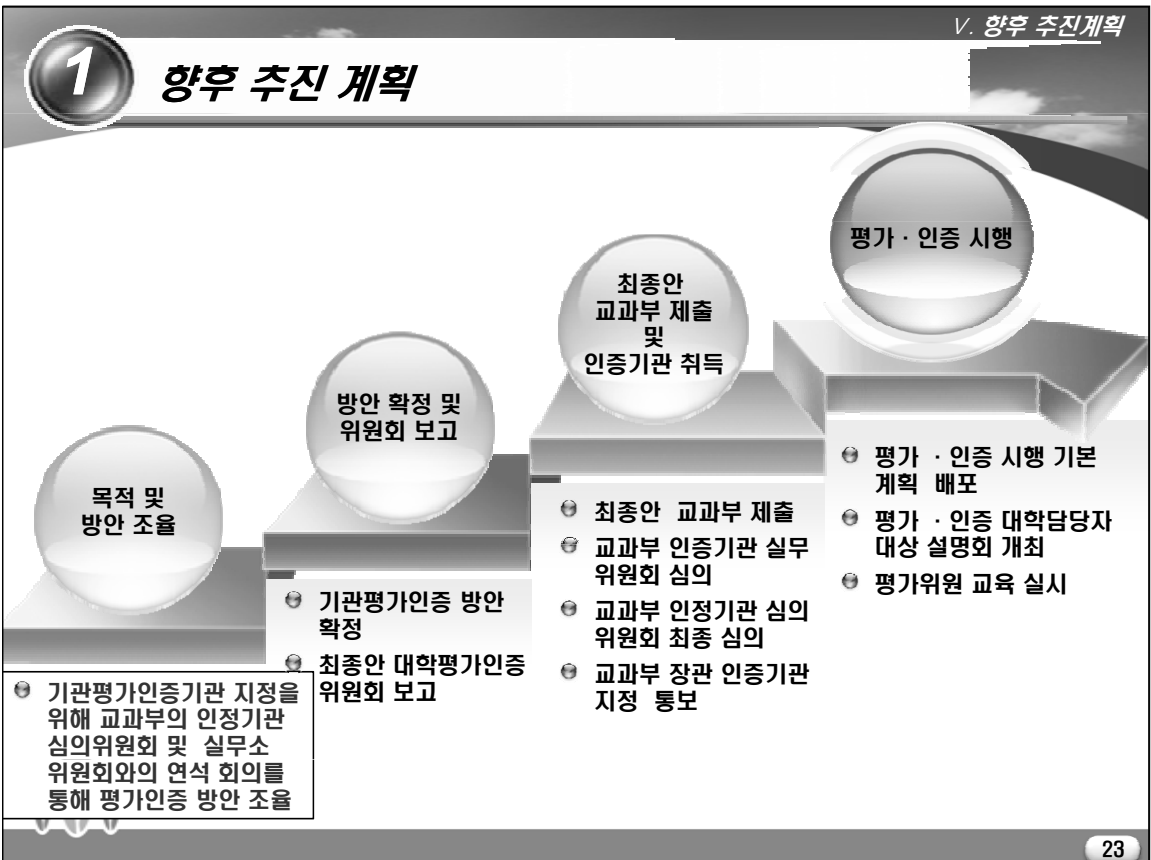
6 평가 · 인증 절차





V

향후 추진계획





2010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

2010년 6월 일 인쇄

2010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전화: 02) 6393-5200

인쇄처 (주)엔터컴케이커뮤니케이션

ISBN 978-89-93935-27-1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